

#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신청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 031-889-1211)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주택	경기도 용인시 거주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 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	서류 접수	계약 체결
일정	2025.12.19.(금)	2025.12.29.(월)	2025.12.30.(화)	2025.12.31.(수)	2026.01.07.(수)	2026.01.10.(토) ~2026.01.17.(토)	2026.01.19.(월) ~2026.01.21.(수)

##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을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여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용인푸르지오클러스트.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게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입주자모집공고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				○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주택공급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용인경전철 본선구간, 금학로 및 남평로에 인접으로 용인경량전철 열차운행 및 도로에 따른 소음, 진동,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단지 남측·서측에는 용인경전철(에버라인)과 금학로(중로1-55, 폭원22m), 남평로(대로3-13, 폭원30m)가 위치하고 있어 방음벽 설치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음기준에는 적합하게 계획되어 있으나, 사용검사(준공) 후 동 도로 및 용인경전철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4동 및 105동의 저층 세대는 엘리오스(반사경)을 이용한 일조개선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 105동 및 106동 저층일부 세대에서는 대지 내 방음벽 설치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권에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12.19.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아파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용인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 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12.29.(월)	2025.12.30.(화)	2025.12.31.(수)	2026.01.07.(수)	2026.01.10.(토)~2026.01.17.(토)	2026.01.19.(월)~2026.01.21.(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 청약홈(09:00~17:30)</li> <li>■ 현장접수 : 건본주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 청약홈(09:00~17:30)</li> <li>■ 현장접수 : 청약통장 가입은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 청약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체 건본주택(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56-4)</li> <li>■ 시간 : 10:00~17:00 (16시 30분 입장 마감)</li> </ul>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건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투기지역, 비투기과열지구인 경기도 용인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2026.01.07.)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 공동주택과-30664호(2025.12.1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811번지 (신대지구 A1 블록)
- 공급규모 : 공동주택 지하 3층 ~ 지상 22~29층 6개동 총 784세대  
[특별공급 423세대(기관추천 77세대, 다자녀가구 77세대, 신혼부부 178세대, 노부모부양 22세대, 생애최초 69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8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 공급대상

(단위: m<sup>2</sup>,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5000632	01	084.9910A	84A	84.9910	26.0960	111.0870	56.6457	167.7327	37.5002	569	56	56	130	17	51	310	259	21
	02	084.9797B	84B	84.9797	27.3357	112.3154	56.6382	168.9536	37.4952	163	16	16	37	4	14	87	76	6
	03	084.9824C	84C	84.9824	26.1937	111.1761	56.6400	167.8161	37.4964	52	5	5	11	1	4	26	26	2
합계										784	77	77	178	22	69	423	361	29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84.9910A	084.9797B	084.9824C
약식표기	84A	84B	84C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sup>2</sup>) × 0.3025 또는 공급면적(m<sup>2</sup>) ÷ 3.3058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사이버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분양 예정 건축시설물의 대지권(지분)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배분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청약 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호수가 배정됩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 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세대)

구분(약식표기)		84A	84B	84C	합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8	2	1	11	
	장기복무제대군인	6	2	1	9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8	2	1	11	
	중소기업 근로자	13	4	1	18	
	장애인	경기도	8	2	1	11
		서울시	9	3	-	12
인천시		4	1	-	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용인시 및 경기도 거주자 (50%)	28	8	3	39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50%)	28	8	2	38	
신혼부부 특별공급		130	37	11	178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7	4	1	22	
생애최초 특별공급		51	14	4	69	
합계		310	87	26	423	

※ 주택형별 특별 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해 신청할 수 없음.

■ 공급금액 및 납부 일정

(단위:세대, 원)

약식 표기	라인	층구분	해당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2차	3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시			
							계약시 2026.01.19	계약후 30일 이내 2026.02.23	계약후 90일 이내 2026.04.27	2026.06.29	2026.12.28	2027.05.31	2027.10.25	2028.03.27	2028.07.31				
84A	101동 1,2,3호 102동 1,2,3,5호 103동 1,2호 104동 1,2,3,5호 105동 1,2,3,5호 106동 1,2,3,5호	1층	10	386,574,098	295,525,902	682,100,000	10,000,000	24,105,000	34,105,000	68,210,000	68,210,000	68,210,000	68,210,000	68,210,000	68,210,000	68,210,000	204,630,000		
		2층	11	386,574,098	326,025,902	712,600,000	10,000,000	25,630,000	35,630,000	71,260,000	71,260,000	71,260,000	71,260,000	71,260,000	71,260,000	71,260,000	71,260,000	213,780,000	
		3층	12	386,574,098	341,725,902	728,300,000	10,000,000	26,415,000	36,415,000	72,830,000	72,830,000	72,830,000	72,830,000	72,830,000	72,830,000	72,830,000	72,830,000	218,490,000	
		4층	12	386,574,098	365,225,902	751,800,000	10,000,000	27,590,000	37,590,000	75,180,000	75,180,000	75,180,000	75,180,000	75,180,000	75,180,000	75,180,000	75,180,000	225,540,000	
		5층	12	386,574,098	369,925,902	756,500,000	10,000,000	27,825,000	37,825,000	75,650,000	75,650,000	75,650,000	75,650,000	75,650,000	75,650,000	75,650,000	75,650,000	226,950,000	
		6~22층	17	386,574,098	372,325,902	758,900,000	10,000,000	27,945,000	37,945,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227,670,000	
		6~25층	40	386,574,098	372,325,902	758,900,000	10,000,000	27,945,000	37,945,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227,670,000	
		6~27층	66	386,574,098	372,325,902	758,900,000	10,000,000	27,945,000	37,945,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227,670,000	
		6~26층	21	386,574,098	372,325,902	758,900,000	10,000,000	27,945,000	37,945,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227,670,000	
		6~29층	120	386,574,098	372,325,902	758,900,000	10,000,000	27,945,000	37,945,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227,670,000	
		7~29층	46	386,574,098	372,325,902	758,900,000	10,000,000	27,945,000	37,945,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227,670,000	
		10~29층	40	386,574,098	372,325,902	758,900,000	10,000,000	27,945,000	37,945,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227,670,000	
		13~29층	34	386,574,098	372,325,902	758,900,000	10,000,000	27,945,000	37,945,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227,670,000	
		17~22층	6	386,574,098	372,325,902	758,900,000	10,000,000	27,945,000	37,945,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227,670,000	
		17~29층	13	386,574,098	372,325,902	758,900,000	10,000,000	27,945,000	37,945,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227,670,000	
		18~29층	12	386,574,098	372,325,902	758,900,000	10,000,000	27,945,000	37,945,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75,890,000	227,670,000	
		84B	102동 5호 104동 1,2,3,5호 105동 1,2,3,5호	1층	5	386,574,098	288,425,902	675,000,000	10,000,000	23,750,000	33,750,000	67,500,000	67,500,000	67,500,000	67,500,000	67,500,000	67,500,000	67,500,000	202,500,000
				2층	7	386,574,098	318,225,902	704,800,000	10,000,000	25,240,000	35,240,000	70,480,000	70,480,000	70,480,000	70,480,000	70,480,000	70,480,000	70,480,000	211,440,000
3층	9			386,574,098	333,925,902	720,500,000	10,000,000	26,025,000	36,025,000	72,050,000	72,050,000	72,050,000	72,050,000	72,050,000	72,050,000	72,050,000	216,150,000		
4층	9			386,574,098	357,425,902	744,000,000	10,000,000	27,200,000	37,200,000	74,400,000	74,400,000	74,400,000	74,400,000	74,400,000	74,400,000	74,400,000	223,200,000		
5층	9			386,574,098	362,125,902	748,700,000	10,000,000	27,435,000	37,435,000	74,870,000	74,870,000	74,870,000	74,870,000	74,870,000	74,870,000	74,870,000	224,610,000		
6~17층	58			386,574,098	364,425,902	751,000,000	10,000,000	27,550,000	37,550,000	75,100,000	75,100,000	75,100,000	75,100,000	75,100,000	75,100,000	75,100,000	225,300,000		
84B	101동 5호 102동 4호 103동 4호 104동 4호 105동 4호 106동 4호	1층	2	386,385,374	301,114,626	687,500,000	10,000,000	24,375,000	34,375,000	68,750,000	68,750,000	68,750,000	68,750,000	68,750,000	68,750,000	68,750,000	206,250,000		
		2층	2	386,385,374	331,714,626	718,100,000	10,000,000	25,905,000	35,905,000	71,810,000	71,810,000	71,810,000	71,810,000	71,810,000	71,810,000	71,810,000	215,430,000		
		3층	2	386,385,374	347,414,626	733,800,000	10,000,000	26,690,000	36,690,000	73,380,000	73,380,000	73,380,000	73,380,000	73,380,000	73,380,000	73,380,000	220,140,000		
		4층	2	386,385,374	370,914,626	757,300,000	10,000,000	27,865,000	37,865,000	75,730,000	75,730,000	75,730,000	75,730,000	75,730,000	75,730,000	75,730,000	227,190,000		
		5층	2	386,385,374	376,414,626	762,800,000	10,000,000	28,140,000	38,140,000	76,280,000	76,280,000	76,280,000	76,280,000	76,280,000	76,280,000	76,280,000	228,840,000		
		6~22층	17	386,385,374	378,814,626	765,200,000	10,000,000	28,260,000	38,260,000	76,520,000	76,520,000	76,520,000	76,520,000	76,520,000	76,520,000	76,520,000	229,560,000		
		6~29층	24	386,385,374	378,814,626	765,200,000	10,000,000	28,260,000	38,260,000	76,520,000	76,520,000	76,520,000	76,520,000	76,520,000	76,520,000	76,520,000	229,560,000		
		19~27층	9	386,385,374	378,814,626	765,200,000	10,000,000	28,260,000	38,260,000	76,520,000	76,520,000	76,520,000	76,520,000	76,520,000	76,520,000	76,520,000	76,520,000	229,560,000	
		20~29층	10	386,385,374	378,814,626	765,200,000	10,000,000	28,260,000	38,260,000	76,520,000	76,520,000	76,520,000	76,520,000	76,520,000	76,520,000	76,520,000	76,520,000	229,560,000	
		21~29층	9	386,385,374	378,814,626	765,200,000	10,000,000	28,260,000	38,260,000	76,520,000	76,520,000	76,520,000	76,520,000	76,520,000	76,520,000	76,520,000	76,520,000	229,560,000	
		25~29층	5	386,385,374	378,814,626	765,200,000	10,000,000	28,260,000	38,260,000	76,520,000	76,520,000	76,520,000	76,520,000	76,520,000	76,520,000	76,520,000	76,520,000	229,560,000	
		84B	102동 4호 103동 4호 104동 4호 105동 4호	1층	3	386,385,374	294,114,626	680,500,000	10,000,000	24,025,000	34,025,000	68,050,000	68,050,000	68,050,000	68,050,000	68,050,000	68,050,000	68,050,000	204,150,000
				2층	3	386,385,374	324,714,626	711,100,000	10,000,000	25,555,000	35,555,000	71,110,000	71,110,000	71,110,000	71,110,000	71,110,000	71,110,000	71,110,000	213,330,000
				3층	4	386,385,374	339,614,626	726,000,000	10,000,000	26,300,000	36,300,000	72,600,000	72,600,000	72,600,000	72,600,000	72,600,000	72,600,000	72,600,000	217,800,000
				4층	4	386,385,374	363,114,626	749,500,000	10,000,000	27,475,000	37,475,000	74,950,000	74,950,000	74,950,000	74,950,000	74,950,000	74,950,000	74,950,000	224,850,000
5층	4			386,385,374	367,814,626	754,200,000	10,000,000	27,710,000	37,710,000	75,420,000	75,420,000	75,420,000	75,420,000	75,420,000	75,420,000	75,420,000	226,260,000		
6~24층	61			386,385,374	370,114,626	756,500,000	10,000,000	27,825,000	37,825,000	75,650,000	75,650,000	75,650,000	75,650,000	75,650,000	75,650,000	75,650,000	75,650,000	226,950,000	
84C	101동 4호 103동 3호	3층	1	386,524,596	326,875,404	713,400,000	10,000,000	25,670,000	35,670,000	71,340,000	71,340,000	71,340,000	71,340,000	71,340,000	71,340,000	71,340,000	214,020,000		
		4층	1	386,524,596	349,675,404	736,200,000	10,000,000	26,810,000	36,810,000	73,620,000	73,620,000	73,620,000	73,620,000	73,620,000	73,620,000	73,620,000	220,860,000		
		5층	1	386,524,596	354,375,404	740,900,000	10,000,000	27,045,000	37,045,000	74,090,000	74,090,000	74,090,000	74,090,000	74,090,000	74,090,000	74,090,000	222,270,000		
		6~25층	20	386,524,596	356,675,404	743,200,000	10,000,000	27,160,000	37,160,000	74,320,000	74,320,000	74,320,000	74,320,000	74,320,000	74,320,000	74,320,000	222,960,000		
		24~29층	6	386,524,596	356,675,404	743,200,000	10,000,000	27,160,000	37,160,000	74,320,000	74,320,000	74,320,000	74,320,000	74,320,000	74,320,000	74,320,000	222,960,000		
	103동 3호	1층	1	386,524,596	275,175,404	661,700,													

	4층	1	386,524,596	342,575,404	729,100,000	10,000,000	26,455,000	36,455,000	72,910,000	72,910,000	72,910,000	72,910,000	72,910,000	72,910,000	218,730,000
	5층	1	386,524,596	347,275,404	733,800,000	10,000,000	26,690,000	36,690,000	73,380,000	73,380,000	73,380,000	73,380,000	73,380,000	73,380,000	220,140,000
	6 ~23층	18	386,524,596	348,875,404	735,400,000	10,000,000	26,770,000	36,770,000	73,540,000	73,540,000	73,540,000	73,540,000	73,540,000	73,540,000	220,620,000

■ 공통 유의사항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토지는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토지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세대 타입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세대 벽체 면적 등의 주거 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최하층이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일 때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단수 조정으로 인하여 각 세대별 계약 면적은 전체 총 연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소수점 이하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오차 조정에 따른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 면적, 대지지분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 및 공부 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증감될 수 있고,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타입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 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 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경우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사업주체의 자체 심의 결과 타입별, 동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공급금액에는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이는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입니다. 또한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 계약 시 또는 공급계약 체결 이후 별도의 계약 일정을 통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및 인접 건물 등의 영향으로 102동, 103동, 104동, 105동의 일부 세대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총 일조 확보 시간이 관련 수인한도(연속 2시간 또는 총 4시간)에 미치지 못할 수 있고, 일조 환경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분양가를 차등 적용하였습니다.
- 일조 미확보 세대의 일조관련자료는 모델하우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관련법규에 따라 채광 정북방향 인동거리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으나, 수인한도 불만족 세대가 발생될 수 있으며, 수인한도 불만족 세대에 대하여는 관련정보를 계약 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 계약자는 사전에 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수분양자는 분양홍보관 내 전시된 단지 모형과 일조권, 조망권 침해 관련 현장설명, 분양홍보관에 비치된 전문기관의 일조 분석 자료를 직접 열람하고 설계도서 등을 통해 일조권, 조망권 침해 정도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침해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제기, 손해배상청구,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타입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 및 피트가 있는 동은 그 해당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 공급 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열쇠 지급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연체요율은 공급계약서에 의거하여 산정됩니다.)
- 공급 대금 납부 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공급 대금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 금액을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 시점에 따라 향후 공급 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공급 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도금 금융 대출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가 분양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 은행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 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고, 이때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되며, 이를 사유로 분양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대출 약정기간은 사업주체와 대출 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을 근거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타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계약체결 후 번식 등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계약서에 따라 공급금액 총액의 10%가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단, 중도금을 1회 이상 납부하였으면 사업주체의 승인 없이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 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 특례)	신혼부부	청약 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대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 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 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p>'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p> <p>→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b>* 기존주택 처분 조건</b> :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li> <li>-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각 호)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li> <li>-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li> </ul> </div> <p>→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 신청자의 부동산 가액 산정 시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p>	<p>- 출산 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p> <p>-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p> <p>- <b>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 특례 적용 불가</b></p> <p>- 청약 신청자나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 특례 적용 불가</p>

※ 혼인 특례 또는 출산 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 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 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 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 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 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 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 특례와 출산 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를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공급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li> <li>■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름</li> </ul>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 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구분		처리 방법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 건은 유효하며, <b>당첨자 발표일이 늦은</b> 당첨 건은 <b>부적격</b>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으로 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 건은 유효하며, <b>접수일시가 늦은</b> 당첨 건은 <b>무효</b>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나이(연월일 계산)가 많은 청약 신청자의 당첨 건이 유효 모두 <b>부적격</b> 처리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으로 당첨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li> <li>■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li> <li>■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li> </ul>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공통 유의사항" p.2 참조)</li> <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ul>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li> <li>-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ul> </li> <li>-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200만원</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300만원</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400만원</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500만원</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할 수 있음</p>			구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77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 서류를 받으신 분</li> <li>■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li> </ul>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 운영과</li> <li>■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li> <li>■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경기도동부보훈지청 복지과</li> <li>■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li> </ul>
당첨자 선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ul>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음</li> </ul> </li> <li>■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li> </ul> </li> <li>■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li> </ul>																
당첨자 선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 수 → ④청약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li> <li>■ ①지역 : 해당 시도(용인시 및 경기도 거주자) : 50%, 기타 수도권(서울·인천 거주자) : 50% (단, 해당 시도에서 경쟁 발생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용인시)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함)</li> <li>※ 용인시 및 경기도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기도 거주자가 다시 경쟁 하며, 이 경우 해당지역 거주 신청자 우선공급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li> <li>■ ②배점</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배점 항목</th> <th style="width: 10%;">총 배점</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100</td> </tr> </tbody> </table>		배점 항목	총 배점	계	10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배점 기준</th> <th rowspan="2" style="width: 10%;">점수</th> </tr> <tr> <th style="width: 30%;">기준</th> <th style="width: 30%;"></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td> <td></td> </tr> </tbody> </table>		배점 기준		점수	기준					비고
	배점 항목	총 배점															
	계	100															
	배점 기준		점수														
	기준																
	미성년자녀 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 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 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 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지난 분													
무주택기간(4)		한부모 가족	5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 도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 신청자나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 신청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하였으면 성년으로 봄) 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입주자저축가입 기간(6)	5	10년 이상	15	- 청약 신청자가 성년자(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하였으면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간주함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 신청할 경우 청약통장 정보를 확인하여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p>※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 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p> <p>(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 가족 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 소유 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p> <p>(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p>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 혼인 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일 때에는 이전 혼인 기간을 포함) 인분</li> <li>■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 지침」에서 정하는 소득 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li> <li>■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li> </ul>		
당첨자 선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당첨자 선정 순서</b> : ①소득 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 수 → ⑤추첨</li> <li>■ <b>①소득 구분</b></li> </ul>		
	단계	소득 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 공급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p>※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p> <p>※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 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p> <p>※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용인시)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②순위</b></li> </ul>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에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 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③지역</b> : 해당지역 거주자(용인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li> </ul>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자녀 기준</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는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 신고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 자녀 포함) 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④미성년 자녀 수 판단 시) 재혼일 때 청약 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에서 출산·입양을 포함 하되, 그 자녀가 청약 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④미성년 자녀 수 판단 시) 재혼일 때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 관계에서 출산·입양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될 때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 관계 증명서를 통해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소득 기준</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확인 시점</li> </ul>			

<b>입주자모집공고일</b> 2025.12.19	<b>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b>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b>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b>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 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신생아 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205,313원~ 10,087,437원	8,578,089원~ 12,009,323원	9,031,049원~ 12,643,467원	9,733,087원~ 13,626,320원	10,435,125원~ 14,609,174원	11,137,163원~ 15,592,02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646,375원~ 11,528,499원	10,293,707원~ 13,724,941원	10,837,259원~ 14,449,677원	11,679,704원~ 15,572,938원	12,522,150원~ 16,696,198원	13,364,595원~ 17,819,459원
추첨 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 충족	10,087,438원~	12,009,324원~	12,643,468원~	13,626,321원~	14,609,175원~	15,592,02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 기준 : 8인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 수
  - ※ (가구원 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 신청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 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 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 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 증명 상의 수령한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 증명서상의 근무 월수) 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 기간(사업자등록 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 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 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를 바람
  - **자산기준 [부동산 가액 산출 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 처리 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 점수의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 평균한 금액
- 자산 보유 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 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 세정 시가표준액</th> </tr>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 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 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 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li> <li>*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li>- 건축물 가액에 토지 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 토지도 토지 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li> </ul> </li> <li>■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li> </ul> </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li> </ul> </li> </ul>																																																																																											
당첨자 선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 기간 → ④추첨</li> <li>■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용인시 거주자) →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li> <li>■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 기준)에 따른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되면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 산정 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li> </ul> </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가점항목</th> <th style="width: 15%;">가점 상한</th> <th style="width: 20%;">가점 구분</th> <th style="width: 10%;">점수</th> <th style="width: 20%;">가점 구분</th> <th style="width: 10%;">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8">① 무주택기간</td> <td rowspan="8">32</td> <td>만 30세 미만 미혼자</td> <td>0</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8</td> </tr> <tr> <td>1년 미만</td> <td>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20</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4</td> <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22</td> </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 <td>6</td> <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24</td> </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 <td>8</td> <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26</td> </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 <td>10</td> <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28</td> </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 <td>12</td> <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 <td>30</td> </tr> <tr> <td>6년 이상 ~ 7년 미만</td> <td>14</td> <td>15년 이상</td> <td>32</td> </tr> <tr> <td rowspan="4">② 부양가족수</td> <td rowspan="4">35</td> <td>0명</td> <td>5</td> <td>4명</td> <td>25</td> </tr> <tr> <td>1명</td> <td>10</td> <td>5명</td> <td>30</td> </tr> <tr> <td>2명</td> <td>15</td> <td>6명 이상</td> <td>35</td> </tr> <tr> <td>3명</td> <td>20</td> <td></td> <td></td> </tr> <tr> <td rowspan="8">③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td> <td rowspan="8">17</td> <td>6개월 미만</td> <td>1</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0</td> </tr> <tr> <td>6개월 이상 ~ 1년 미만</td> <td>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11</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3</td> <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12</td> </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 <td>4</td> <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13</td> </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 <td>5</td> <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14</td> </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 <td>6</td> <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15</td> </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 <td>7</td> <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 <td>16</td> </tr> <tr> <td>6년 이상 ~ 7년 미만</td> <td>8</td> <td>15년 이상</td> <td>17</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p>	가점항목	가점 상한	가점 구분	점수	가점 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가점항목	가점 상한	가점 구분	점수	가점 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나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부양자나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li> </ul> </li> <li>■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였으면 유주택자에 해당</li> </ul>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세대 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li> <li>※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li> </ul> </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li> </ul> </li> <li>■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 가 있는 분</li> <li>-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 세대'와 '단독 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li> <li>* '단독 세대'란, 단독 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 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li> <li>* '단독 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li> </ul> </li> </ul> </li> <li>■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 지침」에서 정하는 소득 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li> <li>** 소득세 납부 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 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li> </ul> </li> </ul>																				
당첨자 선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당첨자 선정 순서</b> : ①소득 구분 → ②지역 → ③추첨</li> <li>■ <b>①소득 구분</b></li> </ul> <table border="1" data-bbox="331 769 2161 1154"> <thead> <tr> <th>단계</th> <th>소득 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신생아 우선공급 (1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2단계</td> <td>신생아 일반공급 (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3단계</td> <td>우선공급 (35%)</td> <td>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4단계</td> <td>일반공급 (15%)</td> <td>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 rowspan="2">5단계</td> <td rowspan="2">추첨 공급</td> <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 </tr> <tr> <td>1인 가구</td> </tr> </tbody> </table> <p style="margin-top: 10px;">※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②지역</b> : 해당지역 거주자(용인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li> </ul>		단계	소득 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 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인 가구
단계	소득 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 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인 가구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자녀 기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li> <li>*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li> <li>*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li> <li>*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 관계 증명서를 통해 확인</li> </ul> </li> <li>■ <b>소득 기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확인 시점</li> </ul> </li> </ul>																				

<b>입주자모집공고일</b> 2025.12.19	<b>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b>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b>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b>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	--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 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 우선공급	130% 이하	~9,366,906원	~11,151,514원	~11,740,362원	~12,653,012원	~13,565,661원	~14,478,311원
신생아 일반공급 /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366,907원~ 11,528,499원	11,151,515원~ 13,724,941원	11,740,363원~ 14,449,677원	12,653,013원~ 15,572,938원	13,565,662원~ 16,696,198원	14,478,312원~ 17,819,459원
추첨 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1인 가구	160% 이하 160% 초과하나, 부동산 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 기준 : 8인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 수
- ※ (가구원 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 신청자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 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 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수령한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 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 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 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를 바람
- **자산기준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 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 세정 시가표준액</th> </tr>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 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 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 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li> <li>*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li>- 건축물 가액에 토지 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 토지도 토지 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li> <li>■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li> </ul>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ul> </li> <li>-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b></p> <table border="1" data-bbox="331 470 2087 650"> <thead> <tr> <th>구분</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200만원</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300만원</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400만원</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500만원</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구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당첨자 선정 순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 기간 → ④추첨</li> <li>-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li> <li>-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li> </ul> </li> <li>■ ①<b>지역</b> : 해당지역 거주자(용인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li> <li>■ ②<b>가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 비율</li> </ul> <table border="1" data-bbox="331 940 2123 1016"> <thead> <tr> <th>구분</th> <th>가점제</th> <th>추첨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 <td>40%</td> <td>60%</td> </tr> </tbody> </table> </li> <li>- <b>가점 산정 기준</b>(「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li> </ul> <table border="1" data-bbox="331 1063 2139 1462"> <thead> <tr> <th>가점항목</th> <th>가점 상한</th> <th>가점 구분</th> <th>점수</th> <th>가점 구분</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8">①무주택기간</td> <td rowspan="8">32</td> <td>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td> <td>0</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8</td> </tr> <tr> <td>1년 미만</td> <td>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20</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4</td> <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22</td> </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 <td>6</td> <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24</td> </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 <td>8</td> <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26</td> </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 <td>10</td> <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28</td> </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 <td>12</td> <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 <td>30</td> </tr> <tr> <td>6년 이상 ~ 7년 미만</td> <td>14</td> <td>15년 이상</td> <td>32</td> </tr> <tr> <td>②부양가족수</td> <td>35</td> <td>0명</td> <td>5</td> <td>4명</td> <td>25</td> </tr> </tbody> </table>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가점항목	가점 상한	가점 구분	점수	가점 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가점항목	가점 상한	가점 구분	점수	가점 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청약 신청자 본인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 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 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 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 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 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 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 증빙을 위하여 당첨자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 분	내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 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 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에 따른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p>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p> <p>4) 확인방법: (1)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본</p> <p><b>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 기준</b></p>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 산정 시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p>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p> <p>5) 확인 방법: (1) 주민등록표등·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 인정 신청 시 추가 확인 서류 -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p> <p><b>③입주자저축 가입 기간</b></p> <p>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 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p> <p><b>주택 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b></p> <p>①무주택기간 적용 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 기준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p> <p>■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p> <table border="1" data-bbox="320 972 2170 1160"> <thead> <tr> <th>단계</th> <th>비율</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추첨제 물량의 75%</td> <td>무주택세대구성원</td> </tr> <tr> <td>2단계</td> <td>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 </tr> <tr> <td>3단계</td> <td>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 </tr> </tbody> </table> <p>■ ③청약통장 가입 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p> <p><b>비고</b></p> <p>■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이나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p>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지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 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 내용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 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로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 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관한 확인(검증) 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 서류**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b>본인 신청 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 통장</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b>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b>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로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로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상기 제 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 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li> <li>-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b>이용 방법</b>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 e’) 서비스 팝업 → 본인 정보 제3자 제공 요구</li> </ul>
<b>공고단지</b>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나

<b>청약연습</b>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 소유 및 각종 청약 제한 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 방법 : 청약자격 확인 → 세대 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 구성원 동의 - <b>이용 방법</b>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 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b>당첨자발표 서비스</b>	<b>청약홈</b>	- <b>조회 방법</b>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당첨조회 - <b>조회 기간</b> : 2026.01.07.(수)~2026.01.16.(금) (10일간) - 조회 기간(10일)이 지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 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 내용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b>문자</b>	- <b>제공일시</b> : 2026.01.07.(수) 08:00 (제공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b>제공대상</b> : 청약 신청 시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b>당첨자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b>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 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b>■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안내</b>				
구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일정	서류 제출 장소	비고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	2026.01.10.(토)~2026.01.17.(토) 10:00~17:00 (16시 30분 입장 마감)	·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 건본주택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56-4) ·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서류 반드시 지참	- 당사 홈페이지 : <a href="https://용인푸르지오클루센트.com">https://용인푸르지오클루센트.com</a>
	일반공급			
예비 당첨자	특별공급	추후 일정 공지		
	일반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용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 서류 제출은 건본주택 방문 접수 예정입니다.  
 - 당첨자에 한하여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지역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 자격 확인 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 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의 경우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 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 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 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소명자료 추가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 미제출로 자격 확인이 안 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합니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건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 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 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 자격을 소명할 때까지 계약서 발급이 되지 않으며, 미 소명 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청약통장 부활)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미확인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부적격이 아닌 일반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 점 해아리시기를 바랍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는 당첨자에게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 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자격검증 구비서류 안내

-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모든 증명서류는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상세로 발급하시기를 바랍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등 추가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기간 내 제출(공통 서류와 당첨 유형별 해당 서류)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

-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 당첨자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 서류	발급 기준	추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 12. 21 이후 신규 발급분 제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발급 기준 : 본인 발급용 (용도: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 신청 불가 /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만 가능)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이 가능하나, 대리인 위임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 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출입국사실증명원		• 조회 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혼인사항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 시 생략
	○	복무확인서	• 10년 이상/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군복무 기간 명시)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의 경우 국방부에서 통보한 명의로 대체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배우자	
가점제 청약자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인(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당첨사실 확인서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인(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기존주택 처분 조건 당첨자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중 기존주택 처분으로 당첨된 자	
기관추천	○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본인	• 해당기관의 추천서(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같음)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증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직인날인)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비자 발급내역 /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 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 ※ 발급기간 :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 배점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배점기준표 작성	

특별공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및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li> <li>•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세대 구성 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상 본인과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하여 발급</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li> </ul>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li> </ul>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li> </ul>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건본주택 비치]</b> 임신의 경우</li> </ul>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li> </ul>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부부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건본주택 비치]</b> 소득 및 자산요건 작성</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li> </ul>
	○	건강보험자격실확인서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실확인서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자격변동 사항이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표시로 발급</li> </ul>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b>[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입증서류 참조]</b></li> <li>또한,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li> <li>※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제출</li> </ul>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li> <li>※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li> </ul>
	○	부동산 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b>[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b></li> <li>※ <b>주민등록번호 공개</b></li> <li>-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li> <li>•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gt; 등기열람/발급 &gt; 부동산 &gt;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li> </ul>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건본주택 비치]</b>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소득이 없는 자</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인신고일 전 출산한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li> </ul>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li> </ul>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가점산정 기준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건본주택 비치]</b> 가점산정 기준표 작성</li> </ul>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부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li> </ul>
	○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30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ul>
	○	출입국사실증명원(상세)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li>※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li> <li>※ 발급기간 : 직계 존속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li> </ul>
	○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li>※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li>※ 발급기간 : 직계 비속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li> <li>※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18세 이상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li> </ul>
	○	국민건강보험	피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치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li> </ul>

		요양급여 내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비속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생애최초 특별공급	○	생애최초 자격 요건 확인서	본인	· <b>[건본주택 비치]</b> 소득 및 자산요건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자격변동 사항이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표시로 발급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b>[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입증서류 참조]</b> 또한,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제출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통산하여 5 개년도 이상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b>[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참조]</b>
	○	부동산 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본인 및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b>[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b> ※ <b>주민등록번호 공개</b>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세대원	· <b>[건본주택 비치]</b>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소득이 없는 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미혼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 [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b>[건본주택 비치]</b> 임신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	가점제산정 기준표	본인	· <b>[건본주택 비치]</b> 가점제 당첨자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상세)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발급기간 : 직계 존속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발급기간 : 직계 비속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참고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대리인 구비 서류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			
	○	위임장	본인	• [건본주택 비치] 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 발급기준 : 본인 발급용 (용도: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 온라인발급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만 가능함)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 12. 21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 건물에 관한 공문,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	무주택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전세 피해자 제출 서류	○	당첨사실 소명 서류	해당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임대차계약서, 낙찰 증명서류(매각허가결정경매, 매각결정통지서공매 등) • 등기사항증명서(임차주택), 임차주택경·공매에서 채권자임을 확인가능한 여타의 자료 *(예시) 경매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 / 공매 : 배분계산서 등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본인 및 세대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서류 외에 사업주체가 당첨자 자격확인을 위해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표1>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생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해당직장 발급 서류 일체 직인날인 필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재직증명서(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출산휴가,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전후 급여신청서(확인서)	㉠ 해당직장 ㉡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 ㉡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발급되지 않을 경우 전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본인의 근로(연봉)계약서를 제출받아 월 평균 소득을 추정	㉠,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 근로자	㉠ 재직증명서 ㉡ 전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 해당직장
	직장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경우	㉠ 재직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해당직장 ㉡ 세무서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공고일 이전 가입)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 세무서
	법인대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재직증명서 ㉡ 전년도 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	㉠ 해당직장/세무서 ㉡ 해당직장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세무서 ㉡, ㉢ 해당직장
기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일용직 근로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금년도 신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및 위촉(해촉)증명서	㉠ 해당직장/세무서 ㉡ 해당직장
	무직	㉠ 비사업자 확인각서 ㉡ 사실증명(소득세 신고사실이 없음 확인) ※ 퇴직자의 경우 전년도부터 모집공고일까지의 모든 소득서류	㉠ 접수장소 ㉡ 세무서

- ※ 상기 소득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소득입증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제출**

서류 구분	확인 자격	증빙 제출 서류(해당직장 발급 서류 일체 직인날인 필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공단 ㉡ 해당직장/세무서
	자영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및 위촉(재직)증명서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포함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입증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 소득금액증명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추가 (해당년도 포함)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 세무서 ㉡ 해당직장 ㉢ 해당직장 / 세무서

- ※ 상기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해당 직장, 세무서 등 해당 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소득세 납부 입증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3>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 서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 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 부동산 소유 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소유 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국구)	㉠, ㉡ 등기소(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포함) ㉢ 행정복지센터, 위택스
	추가 (해당자)	㉣ 공동(개별)주택공시가격 확인원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 결과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 행정복지센터 ㉤ 행정복지센터 ㉦ 위택스, 이택스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세대원별 각각 발급)를 인쇄하여 제출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계약 장소	문의전화	비고
<b>당첨자 계약 체결</b>	2026.01.19.(월) ~ 01.21.(수) 3일간 10:00 ~ 17:00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 건본주택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56-4 )	031-889-1211	※ 일정 및 시간의 변동이 있을 시 당첨자를 대상으로 별도 공지함

- ※ 당첨자 계약체결 일정 및 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 당첨자의 경우 서류검수 기간 내 자격검증 서류 미제출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류 검수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 12. 21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인감도장	본인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시 제출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위임 불가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본인	• 해당 세대의 아파트 분양계약 및 발코니확장, 추가선택품목 계약에 따라 납부한 전자수입인지(사업주체와 균등 부담)
	○		부동산 실거래신고서 및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b>[건본주택 비치]</b> 아파트 공급대금과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합계액과 일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대리인 위임 불가 / 온라인발급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 <b>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b>
		○	당첨유형별 입주 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일체	본인	• <b>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b>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일체	본인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대리인 계약 시 (추가 서류)	○		위임장	본인	• <b>[건본주택 비치] 계약자(본인)의 인감도장 날인</b>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 온라인발급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만 가능)
	○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 12. 21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 ※ 대리인 계약 시에는 인감증명서만 인정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지참한 대리인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 분양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1차 계약금	하나은행	101-910057-61904	한국자산신탁(주)
2차,3차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예정		

-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공급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1차 계약금은 상기 납부계좌로 입금 후 무통장 입금 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건본주택에서 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합니다.
- ※ 2차, 3차계약금, 중도금부터 잔금까지의 분양대금은 계약자별로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됩니다.
-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 '공급대금',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구분하여 입금하여야 하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101동 101호 : 서명란에 "1010101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
-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점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은 1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단, 환불금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계약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 부적격으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②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1)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현황 등)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자를 판명합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계약 이후 주소 또는 인적사항 등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반드시 당사(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부동산 거래(전매 등)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 시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기로 합니다. 2022.12.31.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계약서의 보완문서로 인지세 과세 대상이며, 이 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인지세는 “갑”과 “을”이 연대하여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①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거래가격(공급대금 + 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기재금액	납부세액	계약자	사업주체	비고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1만원	1만원	■ 계약자, 사업주체 각각 50% 납부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2만원	2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3만5천원	3만5천원	
<b>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b>	<b>15만원</b>	<b>7만5천원</b>	<b>7만5천원</b>	

※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분양권 전매 등 해당 없음)에 한해서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며, 사업주체 부담분의 수입인지는 입주 시 별도 교부 예정입니다.

② 납부방법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종이 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 후 출력하거나, 우체국 및 은행에서 구입하여 과세문서에 첨부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 중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서 중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로 문의 바랍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법인·단체포함)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가.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를 한다. (단, 공급계약이나, 매매는 부동산거래신고로 같음하고 증여, 교환 등만 해당함)

나.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한다.

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를 한다.

라.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한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세대주, 해당지역 거주요건,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확인 등)

####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공급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④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는 건분주택에 방한하여 「당첨자 명단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 작성 및 제출 시 청약통장 재사용은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 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를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1) 수도권: 1년
  - 2)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자 중도금대출 안내**

- 본 공동주택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용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중도금 무이자”란 분양계약의 정상적 이행 조건하에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월 대출이자를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부담하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총 분양대금의 10% 완납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 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 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관련정책·대출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분양사무소)은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 보증수수료, 기타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은행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건으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가 기인하므로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법인은 중도금대출이 불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증 발급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빠른날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도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9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b>검색대상</b>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b>주택의 범위</b>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b>주택처분 기준일</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li> <li>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li> <li>2의3. 제23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li> <li>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li> </ol> </li> </ol> </li> <li>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li> </ol> <p>*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b>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li> <li>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li> <li>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li> <li>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li> </ol> </li> <li>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li> <li>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li> <li>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li> <li>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li> </ul> </li> <li>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li> <li>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li> <li>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일 것</li> <li>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li> <li>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li> <li>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li> </ol> </li> </ol> </li> </ol>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10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 계약

###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및 납부방법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잔금(90%)	입주 지정일	
84A	33,000,000	3,300,000		29,700,000	
84B	33,000,000	3,300,000		29,700,000	
84C	33,000,000	3,300,000		29,700,000	

납입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하나은행	591-910072-03504	한국자산신탁(주)
잔금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가상계좌)		

###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상기 계약금 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계좌와 별도로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관리계좌(모계좌)입니다.
-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내에 발코니확장비 납부계좌로 입금(입금 예시 : 101동101호 당첨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 기재) 후 입금증은 견본주택으로 제출 바랍니다.
- 잔금 납부 : 계약자별로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약금 계좌(모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됩니다.
- 세대별 가상계좌는 공급계약서에 명기될 예정이오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잔금의 납부기일과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발코니 확장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 하더라도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코니확장 공사비 완납세대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발생 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실, 실외기실 등 제외)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동주택(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 공사비 공급금액은 확장으로 인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외부샤시, 확장형 주방가구, 확장 부위 가구 설치(형별 상이), 확장 부위 마감 연장, 거실 우물전장 확대비용이 포함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사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색채 및 사양이 실 시공 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 흥보물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타입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손잡이 모양, 하드웨어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 개폐 방향,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출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감지기,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타입, 위치 수량 등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용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사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아파트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발코니 확장 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 후에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장에 덕트, 연도 및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는 우수에 의한 물고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에는 바닥난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조명기구, 감지기, 스위치, 배선기구, 스프링클러 헤드, 환기 디퓨저, 냉매배관 등의 설치 수량 및 위치,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동일평형이라도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깊이 및 천장고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허용오차 내)
- 발코니 확장 시와 비확장 시 발코니 바닥단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상태 변경, 실사용 면적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당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시 창호 및 각종 가구류(주방가구, 일반가구, 선반가구 등) 및 확장 시 제품품목 등 구성이 확장 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카탈로그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시 추가선택품목은 선택할 수 없으며 기본형으로 설치됩니다.
-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플러스옵션 I】 추가선택품목

### 1. 라이프업 스타일링(유상)

#### ■ 현관 중문

(단위: 원, VAT 포함)

선택항목	약식표기	선택형		금액	비고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		
현관 중문	전타입	미설치	3연동 슬라이딩 도어	1,500,000	-

- 현관 중문 기본형(1안) 선택 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 중문 디자인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써 계약 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현관 중문의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차단의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 현관 중문은 본 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 시 공간 상의 이유로 배선기구, 스프링클러, 환기디퓨저, 화재감지기, 조명기구의 배치 및 수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벽/바닥 마감재 특화

(단위: 원, VAT 포함)

품목	약식표기	선택형	금액	비고
----	------	-----	----	----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			
벽/바닥 마감재 특화	전타입	1. 바닥 : 강마루(섬유판) 2. 벽 : 실크벽지 3. 거실 아트월 타일 (600*1200)	1. 바닥 : 광폭 강마루 (섬유판) 2. 벽 : 흡착벽지 (천장 제외) 3. 거실 아트월 세라믹 타일 4. 복도 1면/소파뒷벽 시트판넬 + 소파뒷벽 간접조명	84A	5,540,000	-
					4,930,000	와이드 리빙 옵션 선택 시
					5,060,000	침실2 특화 옵션 선택 시
				84B	5,410,000	-
					4,780,000	와이드 리빙 옵션 선택 시
					4,930,000	침실2 특화 옵션 선택 시
				84C	5,410,000	-
					4,780,000	와이드 리빙 옵션 선택 시
					4,930,000	침실2 특화 옵션 선택 시

- 본공사 시 강마루(섬유판) 및 광폭 강마루(섬유판)의 제조사 및 규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마감재 두께에 따른 안목치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부위별로 규격, 나누기, 시공 상세 등이 상이 합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설치되는 흡착벽지는 도배지가 시공되는 벽 부분에 해당되며, 천장은 제외됩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타입 및 평면 옵션에 따라 시공 부위가 상이합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소파뒷벽에 설치되는 간접조명의 규격 및 상세, 형태, 이격거리는 본공사시 접합부 마감품질 향상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복도 및 소파뒷벽의 시트판넬과 소파뒷벽의 간접조명은 설치되지 않으며, 도배로 마감됩니다.
- 벽/바닥 마감재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각 세대에 비치된 샘플 및 이미지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명 특화

(단위: 원, VAT 포함)

품목	약식표기	선택형		금액	비고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			
조명 특화	전타입	1. 기본 조명기구 2. 스마트스위치 일반형	1. 특화 조명기구 : 거실 라인간접등 / 침실 및 다목적실 옛지등 2. 스마트스위치 고급형(주방포함)  1. 특화 조명기구 : 거실 라인간접등 / 침실옛지등 2. 스마트스위치 고급형(주방포함)	84A	2,460,000	-
					2,210,000	주방 특화 옵션 선택 시
					2,290,000	침실2 특화 옵션 선택 시
				84B	2,040,000	주방 특화, 침실2 특화 옵션 선택 시
					2,210,000	-
					2,040,000	침실2 특화 옵션 선택 시
				84C	2,210,000	-
					2,040,000	침실2 특화 옵션 선택 시

- 조명 특화 선택에 따라 등기구 위치 및 수량 등이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 특화 선택형(2안)의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Spec, 설치수량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1안)은 기본 조명기구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 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조명 특화 선택형(2안)의 거실, 침실등의 디밍/색온도 조절 기능은 하부면을 비추는 조명부분만 제공됩니다.
- 조명 특화 선택형(2안)은 디밍과 색온도 제어가 가능한 풀터치 고급형 스마트스위치가 제공됩니다. 기본형(1안)은 조명ON/OFF 기능만 가능한 일반 스마트스위치가 제공됩니다.
- 조명 특화 선택형(2안)의 고급형 스마트스위치 중 주방은 디밍/색온도 조절 기능이 구현되지 않으며 평면옵션의 선택에 따라 스마트스위치가 미적용 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스위치의 설치 위치에 따라 스마트스위치의 기능 및 형태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세대 內 안내 되어 있는 일반형 스마트스위치의 POP 이미지는 샘플 이미지이며, 공간 및 조명 회로에 따라 버튼 수량은 상이합니다.
- 조명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타입에 따라 시공부위가 상이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특화(84A), 침실2 특화 옵션과 중복 선택 시 등기구 위치 및 수량 등이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명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와이드 리빙 옵션과 중복 선택은 불가합니다.

2. 라이프업 수납(유상)

■ 현관 수납 특화

(단위: 원, VAT 포함)

- 디자인선반(조명포함)은 전원 연결로 인해 고정 설치되어 이동할 수 없으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품목	약식표기	선택형		금액		비고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			
현관 수납 특화	전타입	1. 현관바닥 : 타일 (600*600)	1. 현관바닥 : 대형타일 (600*1,200)	84A	2,150,000	-
		2. 기본 신발장	2. 신발장 특화 : 오픈장(조명포함) + 디자인선반(조명포함) + 신발장 하부조명	84B	1,910,000	
		3. 현관창고 : 여닫이도어 + 폴대형 시스템선반	3. 현관창고특화 : 폴딩도어 + 벽판넬 시스템선반	84C	1,950,000	

- 현관 가구 조명의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신발장 상단에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위치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수납 특화 옵션은 타입에 따라 시공부위 및 규격, 특화사항이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수납 특화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신발장의 구성 및 가구도어 열림방향 등이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수납 특화 옵션형(2안) 선택시, 조명에 대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지만,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세대는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관 수납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폴대형 시스템선반이 설치되며, 현관창고 내부는 벽지로 마감됩니다.
- 현관 수납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각 세대에 비치된 샘플 및 이미지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수납 특화 옵션형(2안) 선택에 따라 도어 사이즈 및 선반 구성과 개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단위: 원, VAT 포함)

품목	약식표기	선택형		금액		비고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			
드레스룸 특화	전타입	1. 파우더장	드레스룸 통합 : 3연동 슬라이딩도어 + 디자인 시스템선반(조명포함)	84A	4,300,000	-
		2. 드레스룸 : 여닫이도어 + 폴대형 시스템선반		84B	5,310,000	
				84C	4,450,000	

- 드레스룸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도배지로 마감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3연동 슬라이딩도어가 설치되며, 별도 가구도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3연동 슬라이딩도어 디자인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써 계약 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3연동 슬라이딩도어의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3연동 슬라이딩도어는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 3연동 슬라이딩도어는 본 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타입별로 가구 및 선반의 위치와 구성이 상이하니,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디자인 시스템선반 유리조명 선반은 전원 연결로 인해 고정 설치되어 이동할 수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조명 선반의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하단에 설치되며, 본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 시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의 스펙, 위치, 수량,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디자인 시스템 선반(조명), 파우더장 및 불박이장/장식장은 조명기구 유지보수를 위해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될 수 있으며, 조명기구는 본 공사 시 규격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1안) 선택시 디자인 시스템선반(조명포함) 전원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타입별로 가구 및 선반의 위치와 구성이 상이하니, 미건립타입은 공간에 따라 선반 수납량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침실2 불박이장

(단위: 원, VAT 포함)

품목	약식표기	선택형		금액		비고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			
침실2 불박이장	전타입	미설치	침실2 불박이장	1,440,000		-

- 침실2 불박이장 선택형(2안) 선택 시 침실2의 문, 스위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2 불박이장 선택형(2안) 선택 시 설치되는 가구의 규격, 상세, 하드웨어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 침실 치수에 따라 가구 상세 사이즈는 상이합니다.
- 와이드 리빙, 침실2 특화 옵션과 중복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침실3 불박이장

(단위: 원, VAT 포함)

품목	약식표기	선택형		금액	비고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		
침실3 불박이장	전타입	미설치	침실3 불박이장	1,660,000	-

- 침실3 불박이장 선택형(2안) 선택 시 침실3의 문, 스위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3 불박이장 선택형(2안) 선택 시 설치되는 가구의 규격, 상세, 하드웨어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 침실 치수에 따라 가구 상세 사이즈는 상이합니다.

### 3. 라이프업 스페이스(유상)

#### ■ 침실2 특화

(단위: 원, VAT 포함)

품목	약식표기	선택형		금액	비고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		
침실2 특화	전타입	1. 기본 목문 2. 기본 조명기구	1. 유리 슬라이딩도어 2. 매입형 특화 조명	1,820,000	-

- 침실2 특화 선택형(2안) 선택에 따라 등기구 사양, 위치 및 수량 등이 상이하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침실2 조명 특화 선택형(2안)의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Spec, 설치수량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침실2 특화 기본형(1안)은 기본 조명기구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 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침실2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의 스펙, 위치, 수량,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2 불박이장, 와이드 리빙 옵션과 중복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유리 슬라이딩도어 디자인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써 계약 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유리 슬라이딩도어의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유리 슬라이딩도어는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 유리 슬라이딩도어는 본 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2 특화 옵션 선택시 침실2는 디밍/색온도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 ■ 와이드 리빙

(단위: 원, VAT 포함)

품목	약식표기	선택형		금액	비고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			
와이드 리빙	전타입	1. 기본 우물천장 2. 기본 조명기구	1. 확장형 우물천장 2. 조명 특화 - 특화 조명기구 : 확장형 거실 라인간접등, 침실 및 다목적실 엷지등 - 스마트스위치 고급형(주방포함)	84A	3,270,000	-
			1. 확장형 우물천장 2. 조명 특화 - 특화 조명기구 : 확장형 거실 라인간접등, 침실 엷지등 - 스마트스위치 고급형(주방포함)	84B	3,040,000	주방 특화 옵션 선택 시
			1. 확장형 우물천장 2. 조명 특화 - 특화 조명기구 : 확장형 거실 라인간접등, 침실 엷지등 - 스마트스위치 고급형(주방포함)	84C		

- 와이드 리빙(2안) 선택 시 침실2가 삭제되며, 확장된 우물천장과 확장형 거실 특화조명기구가 시공됩니다.
- 와이드 리빙(2안) 선택에 따라 등기구 위치 및 수량 등이 상이하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와이드 리빙 선택형(2안)의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Spec, 설치수량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와이드 리빙 기본형(1안)은 기본 조명기구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 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와이드 리빙 선택형(2안) 선택 시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의 스펙, 위치, 수량,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특화(84A) 옵션과 중복 선택 시 등기구 위치 및 수량 등이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침실2 불박이장, 침실2 특화 옵션과 중복 선택이 불가합니다.
- 와이드 리빙 선택형(2안) 선택 시 침실2에 설치되는 매립냉매배관은 설치되지 않으며, 거실 1개소만 설치 됩니다.

4. 라이프업 키친(유상)

■ 주방 특화

(단위: 원, VAT 포함)

품목	약식표기	선택형		금액	비고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4안			
주방 특화	84A	1. 기본형 주방기구 2. 벽 : 국산 타일 (300*600) / 상판 : 인조대리석 3. 수전 : 국산 4. 주방 기본 조명기구 5. 와이드 싱크볼 + 걸이형 ACC 6. 침니형 렌지후드 7. 다목적실	2안	벽/상판 : 엔지니어드스톤	1,820,000	-
			3안	1. 평면 특화 : 특화형 아일랜드(고급형 수저분리함+바탕) + 유리장식장 + 특화형 팬트리(폴딩도어+수납장) + 가구판넬 2. 벽 / 상판 : 세라믹타일 3. 수전 : 외산 (한스그로헤) 4. 주방 특화 조명기구 : 주방 슬림라인등 + 식탁레일등 + 주방상부장 하부조명 5. 주방액세서리 특화 : 절곡형 싱크볼 + 미드웨이 ACC 6. 독립형 렌지후드	14,400,000	-
	84B	1. 기본형 주방기구 2. 벽 : 국산 타일 (300*600) / 상판 : 인조대리석 3. 수전 : 국산 4. 주방 기본 조명기구 5. 와이드 싱크볼 + 걸이형 ACC 6. 침니형 렌지후드 7. 주방 팬트리	2안	벽/상판 : 엔지니어드스톤	1,690,000	-
			3안	1. 평면 특화 : 특화형 아일랜드(고급형 수저분리함+바탕) + 유리장식장 + 특화형 팬트리(폴딩도어+수납장) + 가구판넬 2. 벽 / 상판 : 세라믹타일 3. 수전 : 외산 (한스그로헤) 4. 주방 특화 조명기구 : 주방 슬림라인등 + 식탁레일등 + 주방상부장 하부조명 5. 주방액세서리 특화 : 절곡형 싱크볼 + 미드웨이 ACC 6. 독립형 렌지후드	13,310,000	-
	84C	1. 기본형 주방기구 2. 벽 : 국산 타일 (300*600) / 상판 : 인조대리석 3. 수전 : 국산 4. 주방 기본 조명기구 5. 와이드 싱크볼 + 걸이형 ACC 6. 침니형 렌지후드	2안	벽/상판 : 엔지니어드스톤	2,180,000	-
			3안	1. 평면 특화 : 특화형 아일랜드(고급형 수저분리함+바탕) + 유리장식장 + 가구판넬 2. 벽 / 상판 : 세라믹타일 3. 수전 : 외산 (한스그로헤) 4. 주방 특화 조명기구 : 주방 슬림라인등 + 식탁레일등 + 주방상부장 하부조명 5. 주방액세서리 특화 : 절곡형 싱크볼 + 미드웨이 ACC 6. 독립형 렌지후드	12,100,000	-

- 엔지니어드스톤 및 세라믹타일은 재료의 물성에 따라 이음매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나누기, 디자인 패턴 및 색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팝업 콘센트의 설치 유무는 타입별로 상이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콘센트 본체 및 전선이 하부장에 노출되며 하부장 수납공간이 간섭될 수 있습니다.
- 주방 특화 옵션은 타입에 따라 가구 및 마감재의 시공부위 및 규격, 특화사항이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특화 기본형(1안) 및 선택형(2안) 선택 시 각 세대에 비치된 샘플 및 이미지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벽/상판 외의 품목은 기본형(1안)과 동일하게 설치됩니다.
- 주방 특화 기본형(1안) 및 선택형(2안) 선택 시 절수기일체형싱크수전 (진명홈바스 / JMK 7200WS) 제품이 설치됩니다.
- 주방 특화 기본형(1안) 및 선택형(2안) 선택 시 침니형 렌지후드 (하츠 / DAC-90S) 제품이 설치됩니다.
- 주방 특화 선택형(3안) 선택 시 독립형 렌지후드 (하츠 / ISH-46S) 제품이 설치됩니다.
- 주방 특화 선택형(3안) 선택 시 상부장 상단에 가스배관 및 후드배기배관 가림막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방 특화 선택형(3안) 선택 시 외산 싱크수전은 한스그로헤 (#72800) 제품이 설치되며, 별도의 싱크절수기가 설치됩니다.
- 주방 특화 선택형(3안) 선택 시 특화조명기구의 형태 및 수량은 타입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특화 선택형(3안) 선택 시 설치되는 특화조명기구는 본공사 시 마감품질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커버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특화 선택형(3안) 선택 시 설치되는 주방상부장 하부조명은 가구 시공성 향상 및 전기/설비 간섭구간으로 인해 본공사시 규격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로 설치 위치 및 길이가 상이합니다.
- 주방 특화 선택형(3안) 선택 시 설치되는 주방상부장 하부조명은 유지보수를 위해 내부에 점검구가 추가되며, 후면에 전선 일부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점검구 설치에 따라 점검구 및 수납장 내부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특화 옵션 선택 시 주방 상부장 하부조명의 점검구 설치 유무 및 설치 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Spec, 설치수량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조명으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 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주방 특화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의 수량 및 적용되는 제품 사양은 변경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스마트스위치(일반형 및 고급형)에는 디밍/색온도 조절 기능이 구현되지 않으며 평면옵션에 선택에 따라 스마트스위치가 미적용 될 수 있습니다.
- 주방 특화 옵션 선택에 따라 스마트 스위치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라이프업 스타일링 조명 특화 선택에 따라 스마트 스위치(일반형/고급형)변경이 가능합니다.
- 주방 특화 기본형(1안) 및 선택형(2안) 선택 시 사출형 와이드 싱크볼과 걸이형 악세사리가 시공되며, 주방 상부장 하부조명은 미설치됩니다.
- 주방 특화 선택형(3안) 선택 시 설치되는 미드웨이 ACC는 타입별로 레이아웃, 규격,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특화 선택형(3안) 선택 시 84A,B타입 특화형 팬트리 수납가구에 로봇청소기장이 적용되며, 로봇청소기 급배수용 공배관이 설치됩니다. (A,B타입 위치 상이)
- 본공사 시 가스배관 시공에 따라 상부장 내부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점검구 설치 및 장 내부 유효공간(폭·깊이)이 일부 감소할 수 있습니다.
- 별도 가전옵션 미선택 시, 주방가구 내 가전 전용 콘센트는 시공되지 않습니다.
- 본공사 시 가스배관 시공에 따라 상부장 내부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점검구 설치 및 장 내부 유효공간(폭·깊이)이 일부 감소할 수 있습니다.
- 별도 가전옵션 미선택 시, 주방가구 내 가전 전용 콘센트는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 냉장고장

(단위: 원, VAT 포함)

품목	약식표기	선택형		금액	비고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		
주방 냉장고장	전타입	냉장고 상부장 + 김치냉장고 상부장	3컬럼 냉장고장 (냉장고 상부장 + 키큰 수납장)	445,000	-

- 주방 냉장고장 옵션 선택에 따라 수납장의 구성이 변경되며, 형태 및 규격은 타입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냉장고장 선택형(2안) 선택 시 3컬럼 냉장고가 제공되지 않으며, 별도 구입 및 설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방 TV

(단위: 원, VAT 포함)

품목	약식표기	선택형		금액	비고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		
주방TV	전타입	미설치	주방TV(13인치, AI음성인식)	600,000	-

- AI음성인식 주방TV의 경우 각 세대별로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어야 제어 및 음성인식이 가능하며(소비자가 별도 구축) 홈네트워크 연동(문열림, 세대현관 및 공동현관 확인 등)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TV 제품 설치시 제품 작동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들이 제품 후면에 노출됩니다.
- 주방TV 제품 설치시, 설치 위치의 상부장 내부에 전기, 통신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4. 라이프업 바스(유상)

■ 욕실 특화

(단위: 원, VAT 포함)

품목	약식표기	선택형		금액	비고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		
욕실 특화	전타입	1. 벽 : 타일 (300*600) / 바닥 : 타일 (300*300) 2. 국산 수전 3. 국산 세면대 / 양변기 4. 욕조 수납형 에이프런 (욕실1)	1. 벽 : 유럽산 타일 (600*1,200) / 바닥 : 유럽산 타일 (300*600) 2. 외산 수전 : 한스그로헤 3. 외산도기 : 파포니(일체형 세면대, 비데일체형양변기) 4. 욕조 측면 타일 마감 (욕실1) 5. 샤워부스 프레임 컬러특화 (욕실2)	9,360,000	-

5. 전자비데 (욕실2)

6. 액세서리류 컬러특화 (수건걸이, 휴지걸이, 코너선반, 수건선반 등)

- 욕실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세대에 비치된 샘플 및 이미지로 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전자비데는 욕실2 1개소에 설치됩니다.
- 욕실 특화 기본형(1안) 선택 시 코너선반의 형태가 원형선반으로 설치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시 욕실 벽/바닥 타일의 나누기 및 상세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장, 샤워부스 등 욕실가구 및 배수구의 제조사, 색상, 규격, 형태 등 상세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특화 선택형(2안) 선택 시 욕조 수납형 에이프런은 타일 마감으로 변경되어 수납공간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

(단위: 원, VAT 포함)

품목	약식표기	선택형		금액	비고
		기본형(무상) - 1안	선택형(유상) - 2안		
욕실 복합 환풍기	전타입	일반형 욕실배기팬	욕실복합환풍기 (힘펠/FHD3-C150P_LUMI) (2개소)	1,300,000	

- 욕실복합환풍기 선택형(2안) 선택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일반형 욕실배기팬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복합환풍기의 설치 방향은 직배기배관 루트에 따라 견본주택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욕실복합환풍기는 무선リモ콘으로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 욕실복합환풍기의 설치위치는 주택형에 따라 상이하며, 동일 주택형인 경우에도 천장 내 설비 위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플러스옵션II】 추가선택품목

※ 아래 추가 선택품목은 시행사 협력사인 (주)케이엔커 발주 품목으로서 시공사와는 관계가 없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하자 발생 시 시공사에 민원 및 하자 제기를 할 수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_엘지전자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선택안	설치 개소	설치 위치	공급금액	비고
84A	선택1	2대	거실+침실1	3,890,000	주방 기본형
	선택2	5대	거실+침실1,2,3 + 다목적실	9,000,000	
	선택3	4대	거실+침실1,2,3	7,500,000	주방 특화형
	선택4	5대	거실1,2+침실1,3, + 다목적실	9,000,000	거실 와이드형
	선택5	4대	거실1,2+침실1,3	7,700,000	주방특화,거실와이드
84B,C	선택1	2대	거실+침실1	3,890,000	
	선택2	4대	거실+침실1,2,3	7,500,000	
	선택3	4대	거실1,2+침실1,3	7,700,000	거실 와이드형

■ 시스템 청정환기(AN005CN1PBN1)\_삼성전자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선택안	설치 개소	설치 위치	공급금액	비고
84A,B,C	선택1	3대	거실+주방+침실1	2,960,000	
	선택2	5대	거실+주방+침실1,2,3	4,920,000	
	선택3	4대	거실+주방+침실1,3	3,940,000	거실 와이드형
84A	선택4	5대	거실+주방+침실1,3 + 다목적실	4,920,000	주방기본 거실 와이드형
	선택5	6대	거실+주방+침실1,2,3 + 다목적실	5,900,000	주방기본

■ 시스템 제습기(AY047BA1SBA)\_삼성전자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설치장소	공급금액	비고
전 타입	드레스룸	1,100,000	

■ 주방가전\_삼성전자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품목	선택안	모델명	공급금액	비고
전 타입	냉장고	선택1	냉장고 RR40C78(9)95AP / 냉동고 RZ34C78(9)65AP / 김치냉장고 RQ34C78(9)45AP	4,900,000	새틴화이트, 새틴베이지
	전기오븐	선택2	36L NQ36A6555CK	450,000	
		선택3	50L NQ50T8539BK	850,000	
		식기세척기 14인용	선택4	일반형 DW80F73Y1UEWS	1,100,000
	선택5		고급형 DW80F75K1USBS	1,400,000	새틴베이지
	인덕션	선택6	3구블랙 NZ63DG403EFK	800,000	

#### ■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의 기본형(무상) - 1안은 확장 시 기준이며, 비확장 시 제공품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고, 계약일정 및 세부내용은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추가선택품목 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후에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아파트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미확장 시 시공상의 문제로 선택이 불가합니다.
- 본 공고 외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지정, 마감재 색상, 디자인, 조명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 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타입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 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구/가전 구성 순서, 도어 개폐 방향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미설치된 타입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의 디자인이 적용되며, 옵션의 형태 및 사이즈는 타입별로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분양안내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4C - 84B 기준)
-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 스마트스위치, 온도조절기, 세대분전반 등의 설치수량 및 위치,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는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옵션 내 요소들은 품목별 개별 선택이 불가하오니, 옵션 관련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계약조건(납부금액 또는 납부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 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형, 각 침실(침실1,2,3)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각각 냉매배관이 시공됩니다(다목적실은 냉매 배관 제공 없음). 거실과 침실2를 통합하는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거실(스탠드형 1개소), 침실1(벽걸이형 1개소), 침실3(벽걸이형 1개소)에 냉매배관이 시공됩니다.(침실2 및 다목적실은 냉매배관 제공 없음)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 품목으로 선택하는 경우 기본으로 제공되는 거실 및 각 침실의 냉매배관과 해당 콘센트 등은 전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추가선택품목금액은 거실 스탠드, 각 침실 벽걸이 에어컨 설치용 냉매배관을 미시공하는 조건입니다.(거실, 침실1 선택 시 침실2, 3 미시공)
- 상기 시스템에어컨 설치금액은 매립냉매배관(거실 및 침실) 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적용되는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냉매배관 및 응축수 배관이 노출 시공됩니다.
- 실외기가 설치되는 발코니는 에어컨 가동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의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제공되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계약되어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후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설치,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 설치 위치는 타입별·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실내기 설치 위치는 거실, 침실, 다목적실로 한정되며, 주방에는 실내기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이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견본주택 설치품과 달리 냉방 전용제품이 설치되므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에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제습기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배관을 공유하므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추가 선택 가능합니다.
- 시스템제습기의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제공되며, 1대당 1개가 제공 됩니다.
- 시스템청정환기는 선택형에 따른 설치 공간의 면적에 따라 공기청정화 능력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작동에 따른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설치에 따라 미설치 세대와 환기 디퓨저의 설치 개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설치에 따라 미설치 세대와 스프링클러, 감지기, 등기구의 설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의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제공되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사용에 따라 주기적으로 필터 교환 등 관리가 필요하며, 소모품 교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청정환기 선택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전원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냉장고'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구성내용에 맞게 '냉장고장'을 선택하여야 냉장고장 및 수납장이 설치되며, 추가선택품목 미선택 시 기본형 냉장고장만 제공됩니다.
- '냉장고' 및 '냉장고장'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냉장고' 추가선택품목은 배치 순서, 문열림 방향, 도어 마감 재질 및 색상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냉장고' 추가선택품목 마감사양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주 시 제조사의 사정으로 단종될 경우 대체 모델이 설치됩니다.
- '식기세척기'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제품 전면부 색상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식기세척기 미선택 시 일반 주방 하부장의 수납장으로 시공됩니다.)
- '식기세척기' 추가선택품목 미선택 시 매립호스 및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전기오븐' 추가선택품목 미선택 시 일반 주방하부장의 수납장으로 시공됩니다.
- '3구 인덕션' 추가선택품목 미선택 시 가스쿡탑(3구)이 설치됩니다.
- '3구 인덕션'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에도 가스배관 및 차단기가 설치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무상서비스기간 이후부터 발생하는 보수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하기로 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실외기(각 실내기 소요 용량 합산, 조합률을 고려하여 제조사가 보증한 범위 내에 적합한 사양으로 설치)가 설치됩니다.
- 상기유상옵선 제품이 입주시 제조사의 사정으로 단종될 경우 대체 모델이 설치됩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선택사항 옵션계약이 불가하며, 옵션계약 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제외한 가전제품을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는 경우,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만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지 않는 경우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플러스옵선 I】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플러스옵선 I 추가선택품목 (시행사 직발주 품목 제외)	계약금	하나은행	591-910072-03504	한국자산신탁(주)
	잔금			
구분	계약금(10%)		잔금(90%)	
납입시기	계약 시		입주 지정일	

■ 【플러스옵선II】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플러스옵선II 추가선택품목 주식회사 케이앤커 발주품목 (시공사 무관 품목)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하나은행	397-910009-16304	주식회사 케이앤커

구분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납입시기	계약 시	2026-12-28	입주 지정일

-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추가선택품목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에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입주시 개별 납부)
-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는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로 아파트 분양대금 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가전 및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가구 옵션 등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일정, 납부방법, 선택타입, 계약주체 등은 추후 통보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별도 통보하는 계약기간 내에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로 입금 (입금 예시 : 101동101호 당첨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 기재) 후 입금증은 견본주택으로 제출바랍니다.
- 플러스옵션 I 잔금 납부 계좌는 세대별로 가상계좌가 부여되며 모계좌로 관리됩니다. 세대별 가상계좌는 공급계약서에 명기될 예정이오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잔금 납부는 공급계약서에 명기된 납부계좌(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추가선택 품목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 품목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완납하였다더라도, 추가선택품목 계약 세대일 경우 추가선택품목비 완납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발생 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11 기타 계약자 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 및 「주택법」제48조의2 「주택법시행규칙」제20조의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입주자 사전방문 일정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8년 12월 예정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입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및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 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 출토, 매립폐기물, 암반발견,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사회재난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계약한 등·호수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해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불이행으로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배상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잔금을 완납한 경우,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관리비에치금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 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발송)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 「공동주택관리법」제11조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그 사실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자들에게 통지할 예정으로, 입주자들은 해당 법령에 따라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 아파트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 정식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성(「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의거)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카페 등)에 대하여는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추가 요청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계획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클럽, 골프클럽, GX클럽, 그리너리카페, 작은도서관, 독서실, 다함께돌봄센터 시니어클럽, 어린이집, 키즈스테이션 등),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등

## ■ 벌칙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분양권 전매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인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별표3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 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인간의 거래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외국인 토지법 및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분양권 전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 세금 신고는 양도인이 자진 신고해야 하며, 신고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분양권 전매(증여, 상속 포함) 절차 및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 하자판정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되며,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 기타 유의사항

-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 등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때 공급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분양신청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분양사무실에 비치된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계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본 유의사항

구분	내용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li> <li>■ 대지 내 개설된 도로는 입주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확보된 도로로 그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과 비용은 입주자에 있습니다.</li> <li>■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건본주택은 사업계획승인 변경 포함,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li> <li>■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li> <li>■ 아파트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용도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 세대당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단, 소수점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li> <li>■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부 각 실 전용면적 안목치수는 발코니 비확장형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다소 축소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부 안목치수와 각종 평면치수는 인테리어 마감이 반영되기 이전의 치수로(기본 거실 아트월 포함) 옵션선택마감재, 가구선택 시 축소되거나 조정되어 시공됩니다.</li> <li>■ 공동주택(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의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li> <li>■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li> <li>■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분양사업자와 무관한 사항입니다.</li> <li>■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자연재해나 기상이변(장마, 폭우, 폭설 등), 전염병 발생, 문화재발굴, 전쟁, 내란,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과,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갑" 또는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지체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li> <li>■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li> <li>■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li> <li>■ 사용검사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체상금을 포함하여 모두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li> <li>■ 현장 상황에 따라 단지명, 단지내 시설명칭, 동호수의 표기 등은 지자체 승인 관련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아파트의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하며,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li> <li>■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li> <li>■ 천연자재(석재, 무늬목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건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색상,베인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하며, 천연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경우 본 시공시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자연적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전기/통신 맨홀 등 인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특기시방서에 별도의 시공기준이 없는 경우 사업주체 또는 감리가 승인한 시공계획서 또는 승인자재 제조사의 시공기준에 따릅니다.</li> <li>■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인증표시는 사업주체 또는 감리가 승인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디지털도어록/말발굽 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li> <li>■ 사업주체 또는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이후에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주체와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입주 이후 계약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 시 "계약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계약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li> </ul>

구분	내용
학교	<p>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초등학생은 서릉초에 배치가능합니다</li> <li>■ 동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중학생은 가칭)역삼초·중동합학교 개교 시 용인1중학군 배치 가능합니다.</li> <li>■ 동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고등학생은 용인 관내 고등학교에 배치 가능합니다.</li> <li>■ 교육부의 급당 학생수 정책,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 및 개발계획 변경 등에 따라 학교 설립, 학급당 학생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국공립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아파트 단지의 건립 예정 세대 규모는 784세대로 「주택법」 제35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본 아파트 단지 복리시설 내에는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2, 교육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용인시에서 해당 어린이집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li> <li>■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용인시와 체결할 예정이며, 해당 협약은 추후 단지 입주자대표 회의에게 해당 협약 상 사업주체의 모든 권리·의무가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자동 포괄 승계될 예정입니다.</li> <li>■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의거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해당 어린이집 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관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필요치 않다고 심의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사업주체와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용인시간 협약을 통해 단지 복리시설 내 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 중에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그 이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반대함을 서면으로 표시하여 해당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 관련 법규 및 규정, 관할 행정기관 및 관할 지자체의 지침에 따라 해당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해 관할 지자체인 용인시가 투입한 비용에 대한 보상책임은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있습니다.</li> <li>■ 본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은 관련 법규 및 관할 행정기관인 교육부의 관련 규정과 지침(관련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 등을 포함한다.),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용인시의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설치·운영 될 예정입니다.</li> <li>■ 교육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입주인 자녀에게 어린이집 정원의 30~7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입소 배정을 할 수 있고, 입주인 자녀 우선입소 배정 이후 잔여 인원은 입주인 자녀와 단지 외부 자녀가 입소 순위대로 배정되며, 개원 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이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li> <li>■ 교육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관리비는 향후 경기도 용인시(경기도 용인시에서 선정하는 위탁운영자(원장)를 포함한다.)에게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됩니다</li> <li>■ 상기 안내 내용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 단지의 세대수 기준 및 입주인 자녀 우선 입소 비율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 지자체 조례, 교육부 지침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지침을 우선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li> </ul>
다함께 돌봄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아파트 단지의 건립 예정 세대 규모는 784세대로 본 아파트 단지 복리시설 내에는「주택법」 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55조의2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용인시에서 해당 센터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로 직영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li> <li>■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해당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용인시와 체결할 예정이고, 해당 협약은 추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해당 협약 상 사업주체의 모든 권리·의무가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자동 포괄 승계될 예정입니다.</li> <li>■ 다만, 해당 단지의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용인시가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지역의 시설 설치 현황, 지역 돌봄수요 등을 고려할 때 복리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거나 입주(예정)자들의 과반수가 해당 센터의 설치에 반대하는 것을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사업주체와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용인시간 협약을 통해 단지 복리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 중에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그 이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에 따른 입주자들의 과반수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반대함을 서면으로 표시하여 해당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 관련 법규 및 규정, 관할 행정기관의 지침에 따라 해당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를 위해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용인시가 투입한 비용에 대한 보상책임은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있습니다.</li> <li>■ 본 아파트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는 관련 법규 및 관할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의 관련 규정과 지침(관련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등을 포함한다.),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와 경기도 용인 시의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설치·운영 될 예정입니다.</li> <li>■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입주인 자녀에게 다함께돌봄센터 정원의 30~7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입소배정을 할 수 있고, 입주인 자녀 우선입소 배정 이후 잔여 인원은 단지 입주인 자녀와 단지 외부 자녀가 입소 순위대로 배정되며, 개소 후 다함께 돌봄센터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 차량이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li> <li>■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의무설치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다함께돌봄 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다함께돌봄센터 관리비는 향후 경기도 용인시(경기도 용인시에서 선정하는 위탁운영자(센터장)를 포함한다.)에게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및 사용료,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됩니다.</li> <li>■ 상기 안내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 및 지자체 조례, 관할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지침 등이 변경될 경우, 해당 변경된 법령·지침 등을 우선 적용하게 됨을 알려</li> </ul>

구분	내용
	드립니다.

■ 설계 유의사항

구분	내용
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구단위계획 등 상위계획에 의해 설치되는 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등은 외부인이 이용 및 통행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외부와 연결된 보행자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 인원의 통행 제한이 불가합니다.</li> <li>■ 단지와 외부도로 사이의 경계 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없는 사항임을 계약자는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li> <li>■ 어린이놀이터의 놀이시설물 및 파고라 등의 크기, 형태는 추후 실시설계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상황에 따라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사다리차를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li> <li>■ 단지 출입구의 문주 및 경비실은 형태 및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차량출입구는 2개소이며, 단지 내에는 차 없는 보행자 도로이며, 비상차량만 진입이 가능합니다. (단, 소방차, 이사차량, 폐기물 수거차량 등 지상이동 필요)</li> <li>■ 단지외와 단지 외부 레벨차 극복을 위해 경계부에 일부 설계 변경(외부계단, 토목 옹벽, 방음벽 기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공기안전매트 설치 위치와 소방차주차, 소방활동공간에는 교목식재가 계획되지 않아 저층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공기안전매트와 소방활동공간 설치 위치는 관련 인허가청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동 ELEV 기계실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 및 커뮤니티시설의 쓰레기 분리수거함, 실외기 설치 위치와 인접한 세대는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 시공 시 설치위치, 크기, 형태 등 세부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레이아웃 위치, 마감재료, 입면디자인,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설계변경,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하기 사항에 따라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소음·빛공해·분진·냄새·진동 발생 등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인경전철 본선구간, 금학로 및 남평로에 인접으로 용인경량전철 열차운행 및 도로에 따른 소음, 진동, 사생활 침해</li> <li>- 주택단지 남측·서측에는 용인경전철(에버라인)과 금학로(중로1-55, 폭원22m), 남평로(대로3-13, 폭원30m)가 위치하고 있어 방음벽 설치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음기준에는 적합하게 계획되어 있으나, 사용검사 (준공) 후 동 도로 및 용인경전철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 피해</li> <li>- 105동 및 106동 저층 일부 세대에서는 대지 내 방음벽 설치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권에 피해</li> <li>- 대지 내 방음벽은 높이 9~11m(방음벽 하부 옹벽 제외)로 계획되어 있어 이로인해 저층부 일부 세대의 조망, 환기 및 채광이 제한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li> <li>- 단지 레벨 차이로 인해 일부 구간에는 옹벽 및 석축, 법면(사면)이 조성되고 특히 옹벽 상부에 방음벽이 추가로 설치되는 구간의 경우 구조물의 전체 높이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 세대는 시각적 위압감이나 폐쇄감을 느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li> <li>- 홍보물(카탈로그, 모형도, CG 등)에 표현되는 방음벽의 디자인, 색상, 재질(방음판의 투명도 등), 기둥(지주) 두께, 간격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li> <li>- 방음벽은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지, 보수, 관리하여야 하는 공용시설물 임.</li> <li>- 주택단지 102동 및 103동은 대지 동측에 문화공원이 계획되어 있어 공원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음</li> <li>-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에 근접해 있는 저층 세대는 프라이버시 및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음</li> <li>- 104동 일부 및 102동 전면에는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위치하고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의 피해</li> <li>- 101동 3호라인, 102, 104, 105, 106동 3호라인 다목적실은 승강기가 근접 설치됨에 따라 승강기 소음 피해</li> <li>- 사업부지 서측의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은 미정므로, 현재 기존건축물이 존치하고 있으며 향후 개발 시 조망, 소음 및 진동의 피해</li> <li>- 사업부지 내 재활용수거장 인접 세대는 조망, 소음 및 악취 등 피해</li> <li>- 105동 1층에는 어린이집이 있고 106동 전면에는 단지 내 복리시설인 경로당이 인접하여 계획되어 있음</li> </ul> </li> </ul>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2동, 105동 1,2,3호라인 저층 일부 세대에서는 동출입구로 인한 프라이버시 및 조망권에 피해</li> <li>-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 동간거리</li> <li>-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일부 일조, 조망 침해</li> <li>- 가로등, 야간 조명,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과 인접세대 소음, 빛공해, 사생활권 침해 등</li> <li>- 단지 주변 도로, 통행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빛공해,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등</li> <li>- 단지 배치 상 쓰레기 집적소, 급배기시설(환기구 등),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에어컨 실외기 및 주방배기구 인접으로 인한 소음, 냄새 및 해충 등 환경권 침해</li> <li>- 주변 건축물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옹벽·석축, 단지 내 휴게공간·필로티어·어린이놀이터·드라이에어리어(D/A), 자전거보관소, 기타 부대시설 등의 설치로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소음 발생 등 환경권 침해</li> <li>- 건물 외부장식물, 문주 및 동출입구에 의한 조망권 제한, 돌출부에 의한 그늘짐 등의 일조 침해 및 빛반사로 인한 빛공해</li> <li>- 지하주차장 기계실/전기실/발전기실/제연환류/우수조/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의 탈취기, 송풍기, 실외기 등에 인접한 세대의 소음, 냄새, 진동 발생 및 돌출물/시설물(의장용 구조물, 향 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태양집광판, 피뢰침 등) 등으로 인한 일조, 빛공해, 조망간섭 등의 환경권 침해</li> <li>- E/V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등 발생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li> <li>-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li> <li>- 단지 내 CCTV와 주차유도시스템을 위한 주차장 카메라는 범죄예방 및 입주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설치되므로 설치 및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바랍니다.</li> <li>- 분양홍보관 내 전시된 단지모형과 일조권, 조망권 침해관련 현장설명, 분양홍보관에 비치된 전문기관의 일조분석 자료를 직접 열람하고 설계도서 등을 통해 일조권, 조망권 침해정도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침해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제기, 손해배상청구,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li> <li>-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정하고 있는 이격거리에는 적합하게 계획되어 있으나, 104동, 105동 일부 저층 세대의 일조 환경 개선을 위해 일조공간제어시스템(신기술) 엘리오스(ELIOS)를 적용, 101동과 102동 옥상부에 설치할 계획이며(해당 시스템의 최종 설치 위치 및 적용 세대는 설계 변경, 시공 여건, 인허가 조건 등으로 인해 변경되거나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엘리오스(ELIOS)는 특정 시간대에 햇빛을 반사시켜 해당 세대의 일조 시간 및 조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연 일조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모든 시간대의 일조를 완벽하게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날씨(흐림, 우천 등)에 따라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li> <li>- 엘리오스(ELIOS) 설치 계획을 포함한 일조 환경의 특성 및 한계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대한 분양가 차등 적용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하고 계약 체결 이후에는 해당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 및 빛공해, 반사경의 성능, 위치, 유지보수 등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추가적인 보상이나 분양가 조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li> <li>■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주차장 진입로 등), 조경시설,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보관소, 지하주차장, 단지 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빛공해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외부에 분묘, 축사, 발전소, 쓰레기처리장, 위락시설 등의 유해시설이 존재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셔야 합니다.</li> <li>■ 일부 부대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냉난방 및 환기시스템 실외기가 각 시설의 옥상 및 주변에 설치될 수 있으며, 향후 입점 업종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및 열기,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분명히 인지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일부 부대시설과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세대의 경우 시설사용자들의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후 계약하여야 합니다.</li> <li>■ 저층부 세대의 경우 석재 마감으로 인해 외부창호가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옥탑, 옥상 및 지하주차장 신축준비는 공사계획에 따라 미시공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해당부위 백업재 및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li> <li>■ 일부 아파트 지붕 및 지상 일부구간에 경관조명, 공청TV안테나,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 등이 설치될 수 있고 상세계획(설치면적,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되며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TV공청 안테나 및 위성수신 안테나는 103동 지붕(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수신 상태에 따라 전파수신이 양호한 아파트 지붕(옥상)으로 이동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실 시공시 연돌효과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공용부 창호의 설치 위치, 개소, 규격,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엘리베이터홀, 부대시설의 경량천장틀 시공부위에 천장틀의 처짐 등 기능상, 안전상 지장이 초래 되지 않을 경우 마이너찬넬 보강은 제외합니다.</li> <li>■ EPS, TPS, AD/PD, PIT, ST, AV 등의 내부벽체(ALC(경량콘크리트블록), 조적벽체, 콘크리트벽체)는 초벌미장 시공을 제외하며, 해당구간의 조적벽체 미장은 E/V 홀 또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시공합니다.</li> <li>■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 (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창이 개폐여부 및 방식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커뮤니티의 형태 및 디자인, 마감재료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 유입 대책을 위해 창 및 문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주출입구 보행진입 개선을 위해 램프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아파트 최상층, 지붕 및 지하주차장, 지상 일부구간에 이동통신 중계기, 태양광패널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의 침해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공용 태양광 패널이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측벽, 옥상(지붕)층 및 엘리베이터 기계실 상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시설을 훼손하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시공여건에 따라 위치 및 규모(크기, 높이,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건축물의 높이가 60m 초과시에는 지면에서 건축물의 높이 5분의4가 되는 지점에 돌침형피뢰침이 설치되어 건물외벽(특정세대 발코니앞) 미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엘리베이터와 인접된 세대에는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용의 배관, 케이블 및 기타 설비 등이 주차장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전기통신사업법 제 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 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설치 위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옥외안테나</td> <td style="text-align: center;">옥상(지붕)층</td> <td style="text-align: center;">101동, 102동, 105동</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중계장치</td> <td style="text-align: center;">옥상(지붕)층</td> <td style="text-align: center;">101동, 102동, 105동</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지하 2층</td> <td style="text-align: center;">헬륨실(3개소)</td> </tr> </tbody> </table>	구 분		설치 위치	옥외안테나	옥상(지붕)층	101동, 102동, 105동	중계장치	옥상(지붕)층	101동, 102동, 105동	지하 2층	헬륨실(3개소)	
구 분		설치 위치											
옥외안테나	옥상(지붕)층	101동, 102동, 105동											
중계장치	옥상(지붕)층	101동, 102동, 105동											
	지하 2층	헬륨실(3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옥상장식물 등)의 위치,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건식공법(모듈어, PC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초, 구조형식, 흙막이, 옹벽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 구조는 현장여건에 따라 PC + RC 복합공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공사용도서의 구체화(세부도서작성) 과정 및 실공사 시 일부 허가도서의 불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구조 상세해석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 부재의 단면 및 주근규격, 배근간격 등의 변경 등 품질제고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변경(입주자에게 별도 안내 및 동의없이 진행함)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치장석재/벽돌 및 필로티 마감은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 각 동 출입구 근처/지상부에는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시설물(D/A)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접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조망권,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엘리베이터 홀 및 공용복도에는 별도의 냉난방 및 환기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제습기 및 공기청정기 가동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 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조경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를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li> <li>■ 조경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 단지 내 각종 인입(상수도, 하수도, 오수, 도시가스, 한전 등)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및 전소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간섭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li> <li>■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세대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li> <li>■ 외부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은 단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사 및 당사의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본 아파트에 적용된 외관특화, 입면, 색채 및 마감재 등 디자인 일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 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li> <li>■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기타 외부시설물(문주, 경비실, D/A, 외부엘리베이터 및 계단실 등)의 외관디자인, 외부색채와 마감계획등은 인허가, 경관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사용성 및 시공성 개선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변경사항이 아닌 경우 별도 입주자 동의절차 없이 향후 보완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외부 및 공용부 마감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요구 등의 민원에</li> </ul>												

구분	내용
	<p>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의 명칭, 외벽 로고, 동표시 부착물과 그래픽의 위치와 수량은 해당관청과 협의하여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분양 당시의 내용과 상이할 수 있고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li> <li>■ 아파트 옥상 및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 및 로고(BI), 태양광 집광판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조명으로 인하여 인접 세대는 빛반사로 인한 눈부심, 낙수 등으로 인한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주차입구, 부대시설, 문주, 주차장 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제한 및 침해될 수 있으며, 마감재료 특성상 반사,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에 인접한 동은 차량 진출입시 발생하는 소음 및 불빛에 의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고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의 주변 세대는 보행자들로 인해 소음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경관조명은 빛공해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 및 작동에 제약이 있거나 위치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옥상구조물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 및 개소, 형태가 변경될 수 있고 옥상구조물 지지를 위한 기둥이 추가 시공될 수 있으며, 옥상구조물 상부는 도장 마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li> <li>■ 본 공사 시 주동 옥상 난간대 및 옥외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후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나 시공자에 시설물의 사용에 대해 그 어떠한 요청이나 중재를 요구할 수 없으며,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 단지 내 계획된 부대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외이며, 카탈로그 등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CG 등의 이미지 자료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획 및 마감재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자는 단지 내 커뮤니티의 공간만 제공하고 내부 집기, 비품 및 운영은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li> <li>■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통합, 사용 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내/외 바닥레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출입구 및 내부 바닥에 경사(슬로프)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가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통합, 사용 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실 배치 형태, 내부 구조 등 건축계획과 마감재 및 집기는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내.외부 디자인과 상호사양 및 규격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부의 냉난방, 급수, 급탕, 전력, 조정용수, 동파방지열선, 제습기, 배수펌프, 환기 장치 사용으로 공용전기료, 수도료 등이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설치 위치에 따라 각 동별로 접근성,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시공자는 준공 후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입주 후 최대 36개월)동안 현장 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시공자에게 이에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내 설치 된 수경시설은 인계 후 안전, 보건, 수질관리는 관리주체의 의무이며, 관리소홀로 인한 냄새, 오염수, 해충, 개구리 소음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는 무관함을 분명히 인지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 부주의로 인한 조경 옥외 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의 책임입니다.</li> <li>■ 우편물 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PD, AD 등 사프트 벽 내부에는 미장/도장 등의 마감을 하지 않습니다.</li> <li>■ 준공 시 도로소음측정 결과에 따라 단지 남측과 서측 내 또는 외부에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다는 사항을 인지 하신 후 계약하여야합니다.(단지 내 방음벽 설치시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 지하층 코어 및 세대 창고에 결로 저감을 위한 장비(제습기)가 설치될 경우, 소음, 진동 및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공용 전기 요금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li> <li>■ 각종 부대복리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 위치는 동에 인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인접세대의 환경권, 조망권 침해,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 각 실의 천장공간 내부가 인접실을 위한 배관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추후 임의로 해당시설을 철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ul>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부의 급수, 급탕, 전력 등의 사용으로 공용 전기료, 수도료 등의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동별, 라인별로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의 대수, 인승, 속도 등은 관계법규가 정한 기준 및 심의조건 등에 맞추어 계획되었으며, 층수 및 사용세대수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의로 조정하지 않아 동별, 라인별로 사용인수 대비 대수 및 인승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준공 전 공사용 운행 등 시험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이에 따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각 동 최상층에 승강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층수 차이로 인해 일부 세대 침실은 기계실과 인접하여 배치됨) 될 수 있고, 승강기,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주차장은 최종 인.허가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 해당 전장고 초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은 사업계획승인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1,130대(지하1층 379대, 지하2층 394대, 지하3층 357대), 지상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 3대, 총 1,133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은 일반, 확장형, 장애인, 소형 주차면 및 콘센트형, 완속충전형, 급속충전형 전기차 주차면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주차구역의 위치, 비율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전기차 등의 충전시설 설치 법적 의무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내 충전시설 및 주차구획은 법적 개소 이상 계획하였으며, 추후 설치위치 및 개소수는 법적 개소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동별 이용 가능한 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주차구획구조 형식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직하부 기둥 및 벽의 간섭으로 차량도어 개폐(운전석 및 보조석) 시 간섭이 발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주차 및 보행 동선의 편의를 위해 주차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트렌치 시공 시 시공 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렌치폭을 포함하며, 트렌치가 측면 및 배면에 시공될 시에는 주차 라인 마킹은 하지 않습니다.</li> <li>■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 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li> <li>■ 아파트 주차장은 각 동별 주차공간의 분포 및 위치에 따라 이용 시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연결통로의 길이와 형태는 동별로 상이합니다. 또한, 경차, 장애인전용, 확장형주차, 일반 주차대수 등의 분포는 일부 동에 편중될 수 있으니 배치 및 사용 편의성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li> <li>■ 주차장 진입을 위한 램프의 마감재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지하 1층 주차장 주행통로의 높이는 2.7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 내부에 설치되는 집수정 및 집수정의 펌프로 인하여, 펌프 작동 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하여 인접세대로 전달 될 수 있고,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의 환기를 위한 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접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조망권,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층에는 소화활동에 필요한 소화수조, 펌프실 및 제연팬 등이 설치되어 기기 작동 시 인접세대는 소음, 진동, 조망권,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택배함은 동별 1개소 지하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지하 무인택배함은 각 주동 세대별 접근거리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ul>
단위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하며,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수점 이하의 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li> <li>■ 건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타입의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li> <li>■ 건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주택에 시공되는 제품은 자재품질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동질 및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계약시 동일 평면이지만 건본주택과 달리 세대 배치에 따라 평면의 좌우 방향이 반대로 시공될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세대 반자높이는 2.3m로 설계되어 있어 세대 내부 마감(창호, 주방 상부장, 수납장 및 배관 등)의 높이 및 형태는 건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하고자 하는 동과 호실의 반자높이를 명확히 인지하여 계약하여야 합니다.</li> <li>■ 본 공사시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및 석재류 등(거실 벽, 주방 벽/상판, 욕실 벽/바닥, 현관/발코니 바닥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및 석재류 등의 줄눈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세대분전함, 세대단자함, 배선기구,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엔지니어드스톤, 석재류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패턴 등은 본 공사 시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ul>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현관바닥, 아트월, 욕실 등의 타일은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발생이 생길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아트월타일 모서리 부위에 재료분리대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추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트월타일과 바닥재 사이에는 온도 팽창 등으로 인한 바닥재 신축으로 틈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부위는 코킹처리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위세대의 실내 마감재 종류 및 두께에 따라 내부 공간 유효 면적과 천장고, 바닥마감 높이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빌트인 주방가전(케이앤커 주식회사 직발주 품목) 미선택 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비치하는 냉장고 크기에 따라 냉장고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li> <li>■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li> <li>■ 가전 기기 등 설치 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과 같으며 그 보다 큰 가전 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할 수 없으니, 입주 후 설치위치를 실측한 후 가전기기와 집기 등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li> <li>■ 세대 내 주방 다용도실 천장에는 환기덕트, 가스배관, 소화배관 등이 설치되어 다용도실 천장고에 제한이 있으며, 그 설치 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냉장고·세탁기·건조기·김치냉장고 등)는 해당 공간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li> <li>■ 세탁기 상부에 건조기를 직렬키트로 설치하는 경우 다용도실 천장 점검구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li> <li>■ 각 세대 신발장 또는 창고, 기타 세대 침실 및 다용도실 내부에 세대분전반, 세대단자함 등이 개별 또는 통합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 기타 마감이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 방향 등은 상이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 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li> <li>■ 본 공사 커텐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우물천장, 가구와 선반 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일부 창호계획에 있어 주거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위치 및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욕실 도어의 표면재는 도어의 물성 상 목창호 도어/문선과 패턴, 색상, 엠보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2 도어는 유리도어로 시공되며, 도어 및 유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 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위세대에 적용된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시 동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 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방싱크장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됩니다.</li> <li>■ 추가선택품목(가구, 가전, 마감재 등)은 반드시 사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li> <li>■ 시스템에어컨(시행사 직발주 품목) 선택 시 실외기는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내벽면 마무리 마감으로 시멘트 몰탈 적용 시 몰탈 바름 총두께는 15mm 내외로 하며 바탕면에 따라 오차범위 ±5mm를 포함합니다.</li> <li>■ 본 공사시 코킹 시공 부위 및 색상은 달라질 수 있으며, 욕실 및 발코니2 천장 나누기, 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신발장, 욕실장, 거울, 빌트인 가전제품 등이 설치되는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엔지니어드스톤, 석재류,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수납가구 및 주방가구의 경우 후면/천장/바닥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li> <li>■ 욕실장 설치되는 뒷벽에 타일이 시공되지 않거나 페타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계약자가 임의로 전유세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행하여 하자 또는 성능 불량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요구를 할 수 없으며,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은 불가하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 유리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위치별로 특성이 다른 유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공사 시 각종 도어 및 창호류의 사양(유리사양, 창틀 디자인, 손잡이, 창호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열림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홈네트워크시스템 서비스의 경우 이동통신사/포털사/제휴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 및 사용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홈네트워크시스템 가전기기 제어서비스는 연동된 IoT 가전기기를 구매하고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제한 및 제공 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홈네트워크시스템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플랫폼 운영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아파트의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등의 사유로 조명기구, 월패드, 분전함, 콘센트, 소방설비 및 배선기구류 등이 동급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외기실 갤러리(루버) 창 프레임 및 갤러리, 방충망의 색상과 제원, 규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외부 색채 디자인에 따라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전열교환 환기장비 및 덕트가 실외기실/발코니 천장에 노출 설치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작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84C타입의 경우 주방배기 덕트가 발코니2 천장에 노출 설치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작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2에는 보일러가 설치되고, 보일러 전면부에는 점검, 보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보일러 전면 공간 미확보에 따른 유지보수 추가비용 발생시 입주자의 부담입니다.</li> <li>■ 발코니2에는 보일러 연도가 설치됨에 따라, 일부 발코니의 상부공간 사용이 제약됩니다.</li> <li>■ 전열교환기에는 외부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프리필터/헤파필터가 설치되며, 필터는 연 1~2회 교체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용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필터 구입 및 교체는 입주자분입니다.</li> <li>■ 화장실 천장에 급수를 위한 분배기 및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li> <li>■ 각 세대 침실 내에 세대분전반 또는 세대분전반, 세대단자함의 세대통합분전함이 설치되며, 시공과정에서 위치 및 마감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 블루투스 스마트폰 인증으로 공동현관 자동문 출입이 가능한 원패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보조 출입키(카드형 RF키)는 세대 당 2개가 지급됩니다.</li> <li>■ 자동 주차위치 저장 시스템은 세대별 등록된 차량을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li> <li>■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됩니다.</li> <li>■ 주방에 설치되는 배선기구(콘센트 및 스위치 등)는 본 공사시 가스배관, 가구장, 악세서리 등 평형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이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으며 평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전원 및 통신단자용 통합콘센트가 주방 타일면에 노출되어 설치 될 경우,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됩니다.</li> <li>■ 세대 내 마감상황(타일, 엔지니어드스톤, 석재류의 줄눈나누기, 도배와 가구 설치내용 등)과 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고려하여 월패드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내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장소별 색온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별 세대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기간사업자에게 제공을 요청해야 합니다.</li> <li>■ 홈네트워크 설비 및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유지 등에 따라 미 입주시에도 일부 전기사용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분전반 차단시 홈네트워크설비, 방법 및 경보 알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li> <li>■ 주방에 가스배관, 렌지후드 환기덕트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일부 가구의 깊이가 줄어들 수 있으며,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주방 상부장 위쪽으로 가스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사용상의 문제가 없는 하자 사항이 아님을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li> <li>■ 세대 동체 감지기는 1층, 2층 및 최상층에 설치됩니다. (1층 필로티인 경우 2층 및 최상층 세대 설치, 1~2층 필로티인 경우 최상층 세대만 설치됩니다.)</li> <li>■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 하부의 간접조명은 가스배관, 가스차단기 등의 설치로 분절, 축소될 수 있습니다.</li> <li>■ 욕실 벽체 등 시멘트 몰탈 떠붙임 공법의 뒷채움은 70~80%로 시공합니다.</li> <li>■ 당해 아파트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하향식 피난기구가 설치됨에 따라 별도의 대피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li> <li>■ 대피공간 없이 별도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관계법령에 따라 화재 등 긴급 피난시 상부세대에서 하부세대로 하향식 피난구를 개방한후, 사다리를 전개시켜 아래 세대로 피난이 되는 구조)가 설치되는 경우, 피난구의 설치 위치는 층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최하층 세대, 필로티 및 주민공동시설 상부 세대는 하향식 피난사다리 설치가 제외됩니다.</li> <li>■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는 그 사용 및 유지 관리에 유의가 필요하며,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하여 항시 대피실(실외기설치공간)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허가상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시공자가 책임지지 않으며, 또한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소음 및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대피실(실외기설치공간)은 관계법령에 따라 물건의 적치가 금지되며 해당 경계벽 및 공간에 창고(불박이장)등 어떠한 구조물도 설치하지 않아야 하고 출입문에 시건 장치는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가 설치되는 장소에 향후 비상상황 발생 시 장애물의 설치로 인한 계약자의 피해에 대해 시행 및 시공측은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li> <li>■ 하향식 피난구는 누수 방지를 위해 바닥 마감보다 돌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피난구 개방시 해당 세대와 하부 세대에 경보 및 관리사무소(방재시스템)에 연동되며 하부 세대에서는 바로 위 세대의 피난구를 열 수 없습니다.</li> <li>■ 세대내 하향식 피난구는 필로티 상부세대를 포함한 최하층에는 설치되지 않으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타입별 상이한 사이즈의 욕실 계획으로 벽, 바닥의 타일 나누기가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쪽타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세탁기가 설치되는 발코니2의 세탁단차 깊이가 세탁기(가전)보다 얇거나 세탁수전 설치로 인하여 세탁기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li> <li>■ 세탁기가 설치되는 발코니2의 세탁단차 범위는 세탁기 설치공간 확보, 벽체 및 도어 간섭 개선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2 세탁단의 위치 및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공사 시 거실, 주방 및 욕실의 타일(추가선택품목)의 패턴은 나누기, 패턴 및 결(베인)은 규칙적이지 않고 랜덤하게 시공되며 색상, 줄눈 나누기 및 간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li> </ul>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방 벽, 상판 이음 부분이 노출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음 또는 분절 부분의 위치가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공사 시 시스템가구의 사양, 길이, 폭,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가구 내 하드웨어 형태 및 색상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본 공사 시 욕실장, 샤워부스 등 욕실가구의 제조사, 색상, 규격, 형태 등 상세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안방에 설치되는 파우더장은 방의 형태에 따라 디자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상부장 또는 주방상부장 내부 일부구간에 SMPS 커버(전기 옵션 등기구 조작함)가 설치됩니다.</li> <li>■ 가전/가구 선택형에 따라 가구 형태 및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주방가구 혹은 수납가구 내에 안정기가 설치됩니다.</li> <li>■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본 공사시 커튼박스의 형태 및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 타입별 현관문폭 사이즈와 개방각도, 동별 현관 외부 엘리베이터 홀 유효공간이 상이하오니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li> <li>■ 추가선택품목 선택 여부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평면옵션 선택에 따른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디자인, 사양, 설치위치, 설치수량, 종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는 미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위 세대 내 세대분전함, 세대단자함, 세대통합분전함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제품사양, 설치방향, 개소, 디자인 및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방에 설치되는 전열기구(콘센트, 스위치 등) 위치 및 수량은 본 공사시 주방 가구, 쿡탑, 개수대, 약세서리 등 설치 위치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li> <li>■ 난방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보일러가 제공되며 설치 위치는 본공사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84C 타입의 경우 보일러 연도 설치로 인해 세탁/건조기를 수직 2단으로 설치하는게 불가할 수 있으니, 설치 전 필히 확인 바랍니다.</li> <li>■ 본공사 시 주방가구 상부에 가스배관 또는 밸브의 가림막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비내력 벽체는 ALC블럭벽체, 경량벽체, 조적벽체, 콘크리트벽체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 천장에 설치될 예정입니다.</li> <li>■ 각 단위세대 목문 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 시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li> <li>■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 외부 파손 및 훼손 사항은 입주자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li> <li>■ 세대 내 난방 온수 분배기의 위치상 주방 구역 및 복도 구간, 다목적실, 부속실 등 일부는 별도의 실별 난방제어가 되지 않습니다.</li> <li>■ 벽걸이TV 설치시 전선, 케이블, 통합콘센트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li> <li>■ 인덕션, 하이브리드 등 전기 쿡탑 용량은 설계기준으로 인프라를 구성하며, 입주자가 추후 설계 용량 이상의 제품으로 별도 설치할 경우 배선 및 배선기구의 변경, 용량 증설은 입주자의 부담입니다.</li> <li>■ 일부 세대는 공용부, 전유부 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욕실, 발코니 바닥 배수구, 환기구, 천장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 욕실 세면기, 양변기, 주방 개수대, 쿡탑 위치는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li> <li>■ 세대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 시 장비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 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방 및 욕실의 환기시설은 세대별 당해층 직배기로 계획되어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직배기로 인하여 소음, 지동 및 인접세대의 냄새 유입 등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반드시 인지하시고 계획하시기 바랍니다.</li> <li>■ 욕실 바닥에는 난방배관이 설치되나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은 제외되며, 세대 현관,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대피실), 보일러실(다용도실) 등에는 바닥 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li> <li>■ 실외기실의 창호 프레임은 외관디자인을 위해 세대별로 색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li> <li>■ 실외기실 도어 및 그릴은 사양, 규격, 열림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대피공간 도어는 세부 사양 및 규격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실외기실 설치공간의 크기는 단위세대 주택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같은 형별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경량벽체인 경우, 중량물 설치나 못박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량물 설치 및 못박음 시에는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물의 탈락에 유의하여야 하며, 천장 석고보드 부위와 벽체 석고보드 부위는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li> <li>■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마루 바닥재는 강마루이며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의 특성상 부주의에 따른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색, 변형, 비틀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 중 일부 홈네트워크 제어 기능은 단지 내에 고정 IP 회선이 연결되어야 가능합니다.</li> <li>■ 고정 IP는 3년간 무상서비스로 공급되며 그 이후에는 유상으로 전환됩니다.</li> <li>■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는 무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이 필요하며, 입주지정기간 이후 3년간 무상서비스로 제공된 후 유상으로 전환됩니다.</li> <li>■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 난방, 환기, 쿡탑열원차단 등) 외에 IoT 가전 연동제품(소비자가 별도구매)은 푸르지오 App에 연계되는 가전사의 App 기능을 통해 구현 가능합니다.(연계되는 가전사는 각 사의 정책에 따라 연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li> <li>■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으로 연동되는 홈넷 및 3rd Party 들의 하자보증기간은 각 기기별 관련 법규에 따릅니다.</li> <li>■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과 연계되는 가전사의 음성인식 스피커는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하여야 합니다.</li> <li>■ IoT 가전기기제어는 세대 내에 무선인터넷 환경(Wifi)이 구축되어야 제어기능이 가능합니다.(소비자가 별도 구축)</li> <li>■ 삼성전자의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IoT 기능이 있는 생활가전제품을 입주자가 별도 구매, 설치 후 이용 가능하며, SmartThings 앱에 제품등록 및 푸르지오 스마트홈 어플리케이션 연동 등 사전 등록과정이 필요합니다.</li> <li>■ 푸르지오 스마트홈 앱을 통해 연동 가능한 삼성전자 생활가전 제품은 9종 가전(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에어드레서, 건조기, 로봇청소기,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Smart TV)이며, 모델에 따라서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공 기능도 당사 및 삼성전자의 운영 정책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한 삼성 SmartThings 앱 사용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6.0이상 iOS 10.0 이상부터 지원(아이폰의 경우 아이폰 6 이상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빅스비 사용시, 안드로이드 7.0 누가 이상 iOS 10.3 이상부터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삼성전자 홈페이지(www.samsung.com/sec/apps/smartthings/), 빅스비 사용환경은 삼성홈페이지(www.samsung.com/sec/apps/bixby/)에서 확인 가능합니다.</li> <li>■ 삼성전자의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댁내에 와이파이 환경이 구축되어야 합니다.(소비자 별도 구축). 또한 삼성전자의 SmartThings 앱을 통한 세대내의 각종 홈넷 기기의 제어 서비스는 입주기간 종료 후부터 3년간 무상이나, 무상기간 이후 홈IoT 플랫폼 제공사 운영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상 전환 시 해당 플랫폼 제공사의 정책에 따릅니다.</li> <li>■ 푸르지오 스마트 홈 App과 연계되는 제휴서비스는 당사와 해당사의 계약기간 혹은 운영정책 등에 의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li> <li>■ LG전자의 스마트 가전과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과의 연동은 당사의 개발 일정이나 해당 사의 정책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풍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일부 세대에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공용복도 및 세대 전용공간의 천장 내부 또는 가구장의 공간이 기계/전기설비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li> <li>■ 건물 전체 지붕 우수 처리를 위해 공용복도 및 전용공간의 천장 내부로 우수관이 관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냄새,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 온수 파이프는 보온재를 시공하지 않습니다.</li> <li>■ 욕실, 드레스룸 및 팬트리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인근 온도조절기(거실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li> <li>■ 현관, 현관펜트리, 발코니, 욕조하부, 샤워부스, 주방가구 하부 등은 바닥난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li> <li>■ 발코니 스프링클러헤드 및 직배기 설치를 위하여 거실 또는 침실 커튼박스의 길이 및 깊이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랜지후드 상부장에는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어 이로 인해 수납공간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li> <li>■ 욕실 천장에 점검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점검구의 규격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욕실 천장 내 설치되는 급수급탕분배기 및 배관은 상부세대용으로서, 상부세대 유지보수를 위하여 하부세대 욕실 천장 내 점검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li> <li>■ 다용도실과 발코니는 비난방구간으로 설치되는 수전 및 배수배관 등은 겨울철 동파에 유의해야 합니다.</li> <li>■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하여 실외기실 루버는 필히 닫힘구조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발코니 바닥배수구는 동절기 장기간 미사용으로 인한 봉수파괴로 냄새가 유입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물을 부어주는 등 입주자가 유지관리해야 합니다.</li> <li>■ 에어컨 가동 시 실외기실 루버는 반드시 열려있어야 되며, 루버 부근에 물건 적치 시 공기 순환 장애로 인한 효율 저하 및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li> <li>■ 가스배관은 단위세대 외벽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가스배관 및 가스계량기 설치에 따라 발코니, 실외기실 내 일부공간의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설치위치는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전기쿡탑 옵션 선택 유무에 상관없이 가스배관 및 차단기는 기존 위치에 설치되며,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쿡탑이 설치될 경우 주방 상판은 타공되지 않습니다.</li> </ul>
기계 설비 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계/전기설 등은 실 시공 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시결과 인접한 세대는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각동 공용부 천장과, 벽 주차장 상부공간, 벽, 기동 주변 및 피트층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li> <li>■ 세대 외 공용부에 설치되는 전기, 통신관련 시설물은 준공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통신단자함/전기분전반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입주 후 세대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전열기기로 인해 순간 전압강하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는 조명기구 및 타 가전제품의 작동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li> </ul>

구분	내용
	<p>특정회사 제품의 문제로 인지하고 제조사에 A/S 요청을 해야 합니다.</p>
발코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코니 확장면적은 발코니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불가합니다.</li> <li>■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li> <li>■ 기본형(비확장)세대의 경우,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li> <li>■ 발코니 확장창호의 열림 방향 및 규격 등은 입주자의 사용환경 및 아파트 내·외부 마감 등을 고려하여 사업승인도서 및 견본주택의 형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형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 난간은 확장형 기준이며,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일부 구간에 난간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에는 상부 배수배관이 천장 내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욕실, 환관 등은 바닥 단차 설계가 적용되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재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li> <li>■ 발코니 중 외기에 면하는 일부 벽체는 결로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되어 실제 발코니 사용 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며 벽면 및 천장에 단열 설치로 인한 단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 사양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 방향, 수량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실내 습도 등 생활 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해야 합니다.</li> <li>■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본 공사시 마감재 설치 등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li> <li>■ 실외기실 갤러리(루버) 창 프레임 및 갤러리의 색상은 외부 색채 디자인에 따라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됩니다.</li> <li>■ 발코니 및 실외기실 등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의 사용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일부 배관이 노출배관으로 시공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li> <li>■ 일부세대는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실외기실, 발코니 등에 완강기 설치로 인한 공간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임의 철거, 제거시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해당 세대에 있습니다</li> </ul>

■ **견본주택 유의사항**

구분	내용
견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법」에 의거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평면도 및 시방서는 견본주택에 열람 가능토록 비치되어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인승, 용량, 탑승위치 등)은 최종사업승인도서에 따라 시공되며, 사업승인 도면상 확인이 어려운 부위는 최종 사용승인 도면을 기준으로 적용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li> <li>■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전시되는 모형 및 이미지(조감도 등)상 표현된 단지명 및 B는 실 시공 시 현장 상황에 따라 위치, 개소수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조명설계에 따라 일부 세대에서는 야간에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계약시 제시된 공급안내서를 포함한 조감도, 세대평면도 등의 각종 인쇄물·CG(조감도, 투시도) 및 면적, 치수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개소, 위치, 규모, 외관 및 색채는 측량결과, 각종 심의 결과(건축위원회 심의 등), 불합리한 설계의 개선 및 표현 오류, 오기 등으로 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구조·성능·제품의 사양은 동급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마주보는 미러형 타입의 경우 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의 위치가 간섭에 의하여 세대간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경우 견본주택보다 훨씬 이동되어 설치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바랍니다.</li> <li>■ 견본주택에 시공된 세대 내 벽지, 천장지 및 타일 등의 내부 마감은 인허가 조건에 따라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색, 재질 등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본주택 내부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추가선택품목, 연출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므로 본공사 설치품목은 계약내용 등을 통하여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연출용조명, 소화기, 시각경보장치 등은 세대 홍보, 연출과 홍보관 소방안전을 위한 것으로 배관, 배선을 포함하여 본 공사 제외 품목입니다.</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된 환기구의 크기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내 환기 성능을 고려하여 위치 및 개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li> <li>■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별 차이가 있으니, 건본주택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li> <li>■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엔지니어드 스톤, 석재류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단차, 코너, 마감재 접합부, 패턴 등은 본 공사 시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된 수전류, 욕실 마감자재(양변기, 세면기, 휴지걸이, 수건걸이, 코너선반, 수건선반 등), 욕실FAN 등의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건본주택에 사용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 한 경우와 신제품의 개발시에 동질 및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위세대의 벽체 마감재 종류 및 두께에 따라 내부공간 면적이 건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건본주택은 84A, 84B타입만 설치되며, 건본주택에 미설치된 타입에 대해서는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전에 평면 형태, 발코니 변화 여부, 가구배치, 실면적 등 건본주택 설치 타입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CG, 모형,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각종 매체를 통한 광고, 홍보물(카탈로그, 홈페이지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공급계약 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 스피커의 개수 및 위치는 건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그 설치 위치가 결정됩니다.</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도의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의 외벽 색채, 마감, 줄눈, 옥상구조물, 그 외 각종 시설물 등의 디자인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승인 및 착공신고에 의거하여 제작된 모형으로 실제 공사 시 일부 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제고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변경(입주자에게 별도 안내 및 동의 없이 진행함)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li> <li>■ 건본주택 건립 시 미관 및 성능향상 등을 위해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된 사항은 추후 건본주택기준으로 사업계획승인(또는 경미한 설계변경신고)처리 할 예정임을 인지 하고 이에 동의합니다.</li> <li>■ 건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건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 겸용 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시설이며, 본 시공시 냉방 전용 시스템에어컨(시행사 직발주)이 추가선택품목으로 제공됩니다.</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류는 본 공사 시 조도개선 및 자재생산업체 부도, 생산중단 시 동등(자재단가)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분전반,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 월패드, 전자식 스위치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개선을 위해 제품사양, 위치,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된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로 설치되었으며 추후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되므로 세대별로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li> <li>■ 건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마감자재는 실제 색상, 패턴이 상이할 수 있고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수준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건본주택 내에 설치된 조명은 매립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 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입니다.</li> <li>■ 건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전시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콘센트, 스위치 및 조명, 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건본주택 각 타입에 연출되어 있는 스포트라이트, 스탠드 조명 및 펜던트는 전시용으로 실시공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건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개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건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등급은 같은 제품일지라도 등급신청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건본주택에 생략 또는 표시(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홍통과 수전의 위치, 조명기기(등기구) 사양 및 위치, 배선기구(스위치 및 콘센트)의 수량 및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및 스프링클러는 건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공사시 세대 내부에는 관련 법규에 맞추어 시공됩니다.</li> </ul>
홍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이미지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습니다.</li> <li>■ 각종 홍보 인쇄물에 이용된 단지 이미지, 단지모형, 세대모형, CG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이미지에 표현된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의 외벽 색채, 마감, 줄눈, 옥상구조물, 그 외 각종 시설물 등의 디자인은 실제 공사 시 일부 사항이 설계변경(입주자 동의 없이 진행 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각종 광고 및 홍보물(건본주택, 카탈로그,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 등에 표시된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공공용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ul>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 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분양 홍보물 및 모형에 표현된 주변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 및 영상물 등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카달로그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공급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공급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li> </ul>

### 13 친환경주택 성능 수준표시 및 분양가격 공시

####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 2)

※시공시 현장여건, 전기, 설비, 구조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부 높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 1층	2.7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2.7m
지하 2,3층	2.3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2.3m

#### ■ 내진성능 및 능력공개

구분	등급
내진능력	내진 I 등급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및 제48조의3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능력 공개에 의거 내진능력을 위와 같이 공개합니다.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내진성능에 해당하는 내진등급(내진특등급, 내진 I 등급, 내진 II 등급)을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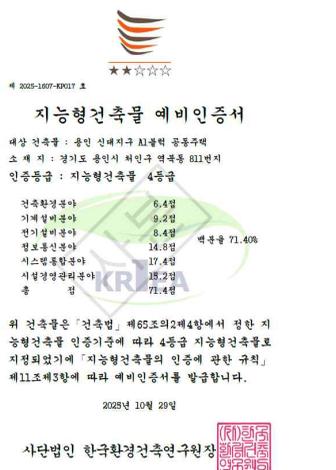
####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의무사항 적용 여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필요 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 (가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방습층 설치 (다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 지역난방 적용
	고효율 전동기 (라목)	적용 -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마목)	적용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 (바목)	적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실별 온도조절장치 (사목)	적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 (가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 설치 (다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라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마목)	적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지능형건축물 예비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p>녹색건축 예비 인증서</p> <p>인증번호: 2025-10월 14일</p> <p>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p>	 <p>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p> <p>인증번호: 2025년 10월 29일</p> <p>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p>	 <p>지능형건축물 예비인증서</p> <p>인증번호: 2025년 10월 29일</p> <p>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p>	 <p>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p> <p>인증번호: 2025년 10월 14일</p> <p>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p>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분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건축 감리	전기 감리	소방 감리
회사명	(자)건축사사무소 태백	(주)대성종합기술단	(주)성우엔지니어링
감리금액	3,245,690,800	566,364,000	842,016,323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호명	용인신대피에프बी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우건설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87번길 17, 203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A동
법인등록번호	134511-0075085		110111-2137895

■ 보증관련 유의 사항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원	보증기간
제 07812025-101-0000700 호	₩ 412,778,940,000 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3조 (보증채권자 등의 협력의무)**

- ①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의 협조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구성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 ② 보증채권자는 공사가 선정한 승계사업자 또는 시공사의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③ 분양권양수자는 양도자가 이미 납부한 입주금영수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옵션)은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56-4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s://용인푸르지오클루센트.com>

■ 분양문의 : ☎ 031-889-1211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함,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 및 이 공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건축법」 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